

【논 문】

만주국 시대 在滿 朝鮮農民의 經濟 狀況

- 延吉縣 陽城村 B屯의 조사 자료 분석 -

김 기 훈*

■ 차 례 ■

1. 머리말
2. 陽城村 B屯(上村)의 概況
3. 土地關係
4. 農業 生産 및 販賣
5. 家計費
6. 現金 收支
7. 맺음말

1. 머리말

재만 조선인에 대한 관심은 이들이 만주에서의 조선인들의 항일운동을 가능하게 한 인적 자원 및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국내외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1910년대와 1920년대에 치중되어 정작 가장 많은 이민이 이루어진 1930년대 이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일제에 의하여 건국된 滿

*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洲國 시대, 즉 1930 - 40년대의 재만 조선농민들의 경제상황에 관한 연구는 최근 들어 약간의 논문이 나오고 있을 뿐 오래도록 연구가 방치되어 온 부분이다.¹⁾ 이러한 실정은 만주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생활하던 조선 농민들의 구체적인 경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제한성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일부 지역의 일부 농민들에 관한 개별조사 자료 이기는 하지만, 분석이 되지 못한 채 사장되어 있는 자료들도 없지 않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延吉縣 陽城村 B둔(上村)에 관한 개별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滿洲國」시대인 1930년대의 재만 조선농의 경제 상황의 일단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滿洲國」은 1933년 실업부 임시조사국을 설치하여 산업경제 전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게 함으로써, 만주 통치의 기본자료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전만에 걸친 농촌실태조사도 행하여 졌는데, 1933년에는 북만주 16개현을 조사하고, 1936년에는 남만주 21개현을 조사하였다.²⁾ 본고에서 참고한 자료는 1936년 남만주 농촌 실태 조사의 일부로서 시행된 간도성 延吉縣 陽城村의 조사자료이다. ³⁾ 간도성에 관한 조사는 재만 조선 농민들의 농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조사는 1935년도 陽城村의 두 마을인 A둔(柳亭村)과 B둔(上村)의 경제 상황에 대하여 1936년 2월 하순부터 약 75일간 실시되었다. 중국인 지주와 조선인 소작인으로 이루어진 A둔에 관한 조사자료는 국내에

1) 洪鐘必, 1987, 『滿洲における朝鮮人農業移民の史的 研究』京都大學; 洪鐘必, 1994, 「만주조선인농업이민의 경제상황에 대하여-1934년 동아권업주식회사 봉천성 소재 조선인 농장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명지대, ; 이형찬, 1998, 「1920~1930년대 한국인의 만주 이민 연구」 『한국사회사연구논문집』12 ; 김영, 2003, 「만주국에서의 일제의 미곡정책과 이주 조선인」 『한국민족운동사연구』37 등 소수에 불과하다.

2) 이 조사를 포함하여 일제가 만주지방에서 행한 농촌실태조사 자료에 관한 포괄적인 소개는 中兼和津次, 1981, 『舊滿洲農村社會經濟構造の分析』東京: アジア政經學會의 제4장 「舊滿洲の農村および農村實態調査について」의 121~181쪽을 참조할 것.

3) 滿洲國 實業部 臨時調査局, 1936, 「延吉縣 陽城村」 『農村實態調査 報告書 戶別之部』第二分冊 新京, , 341~566쪽. 이후 『報告書』로 약칭.

서 이형찬 씨에 의하여 일차 분석된 바 있으므로,⁴⁾ 본고에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조선인 농가만으로 구성된 B분에 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본고의 주목적은 1930년대 재만 조선농민들의 경제상황을 분석하려는 것이지만, 본고가 참고하는 자료는 집계 방법 상의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농가의 경제 상황은 농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상태가 적자인가 흑자인가에 따라 판단된다. 농가 경제의 흑자 정도를 <경제 잉여> 또는 <저축>으로 표시하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농가의 소득과 가계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농가의 <경제 잉여>는 농가소득에서 가계비를 감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농가 소득은 농업 소득과 비농업 소득을 합한 것인데, 농업 소득은 농업 조수익에서 농업 경영비를 마이너스한 것을 말한다. 농업 조수익은 곡물 생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면화, 과수 등의 특수 작물 또는 목축 등 특수 품목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세분화된다. 농업 경영비는 농업 조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발생하는 경비로서 토지비, 농구비, 가축비, 소작료 등이 포함된다. 한편, 비농업 소득은 농업 외의 부업 수입 등에서 이러한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사용된 제반 비용을 감한 것이다. 단, 모든 종류의 소득에는 현금만이 아니라 비현금도 금액으로 환산되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가계비를 산출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집계 방법에 의하여 재만 조선농가의 경제 조사가 실시된 것은 남만주철도 주식회사의 산업부가 동아권업주식회사의 토지에서 소작하는 조선인 농가에 대하여 1934년도와 1935년도의 경제상황을 조사한 것 밖에 없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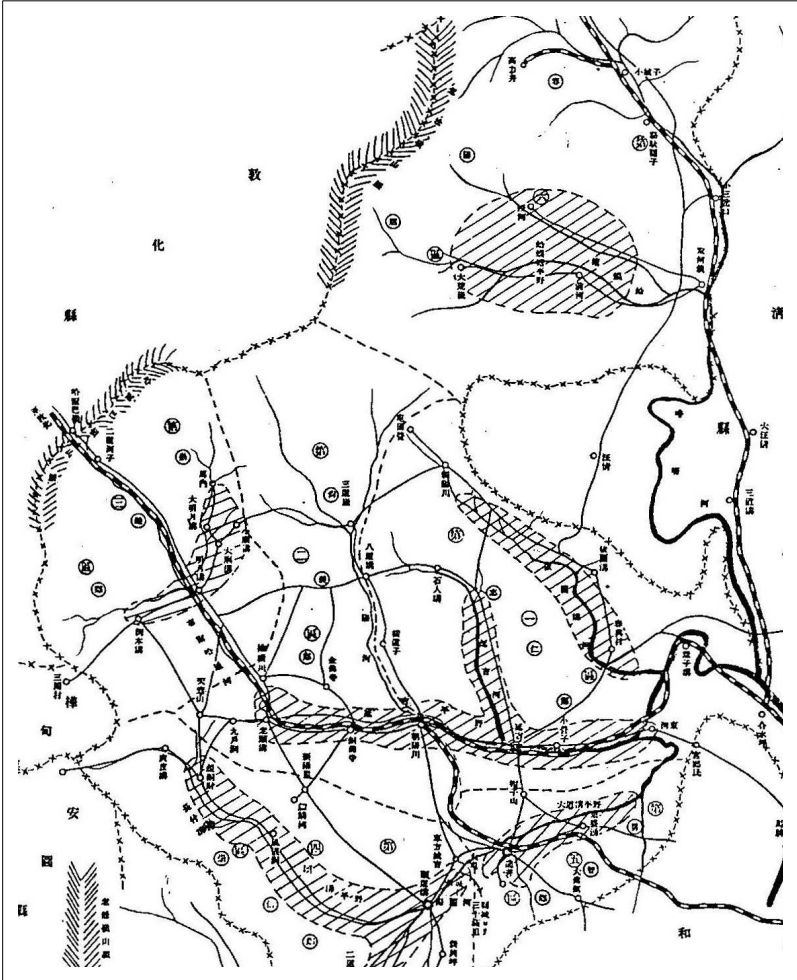
4) 이형찬, 1998, 앞의 논문, 247~281쪽.

5) 滿鐵 産業部, 1936-1937, 『鮮人農家經濟調査報告 -昭和九年度-』1-2 및 1937, 『鮮人農家經濟調査報告 -昭和十年度-』 참조. 1934년도의 報告書를 이용하여 재만 조선인 수전 소작농가의 경제상황을 분석한 연구 결과는 洪鐘必, 1987, 앞의 논문, 69~86쪽 참조.

본고에서 이용하고 있는 자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 자료가 수집되지 않고, 생산, 판매, 생활비 현금 지출표, 현금 수지, 대차관계 등에 관한 조사 자료만이 수집되었다. 특히 현물 소작료 등 비현금 수입이나 지출이 누락되어 있어 농가 소득이나 가계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므로 농가의 수입과 지출 양면에 관계된 단편적인 정보 밖에 얻지 못한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본고에서는 調査表를 토대로 작물 수확량과 매각량, 가계비, 현금수지를 차례로 분석함으로써 조사대상인 上村 조선농가들의 개략적인 농가 경제 상황을 제시하는데 만족할 수 밖에 없음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한다.

논문의 내용은 우선 陽城村 B둔으로 조사 목적상 명명된 上村의 概況을 간략히 소개한 다음, 농촌 경제의 가장 주요한 생산 수단인 토지의 경작 규모와 소유 관계 및 소작 관계를 토지 관계라는 항목으로 다루었다. 이어서 농업생산과 판매 상황을 다루고, 가계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현금 수지를 분석하여 농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시도하였다.

地圖 1 延吉縣 要圖



2. 陽城村 B屯 (上村)의 概況

가. 陽城村 概況

조사마을인 上村의 概況을 살피기에 앞서 上村이 속하고 있는 延吉縣 陽城村의 지리적 위치, 교통, 마을의 역사 및 소속 마을들에 대한 개략적인 상황을 알아보자.⁶⁾ 陽城村은 龍井村과 頭道溝 사이에 있는데, 촌의 서남쪽을 흐르는 해란하 유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頭道溝 평야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지도 1 참조) 따라서 촌의 지형은 동서남 세 방향으로는 광활하게 트였고, 북쪽에 완만한 구릉이 횡으로 뻗어 있을 따름이다. 부근 일대는 평야이건 구릉지대이건 모두 개척이 되어 평지에는 수전 경영을 위한 수로가 길게 파여져 있고, 구릉지대에는 나무들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 계단식 밭들이 올망졸망하게 늘어서 있다.

촌의 북방에 마을을 횡으로 가로지르는 비포장 도로가 하나 있는데, 이 도로가 陽城村을 頭道溝와 龍井村에 연결시켜 주는 유일한 도로망 역할을 하고 있다. 龍井村까지 30滿里 (1 滿里는 576m), 頭道溝까지 10滿里인데, 龍井村과 頭道溝 사이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서 하루에 5 내지 6회 왕복하는 승합 자동차 편이 있다. 그러나 비나 눈이 심하게 내리면 길이 질어서 자주 불통된다. 주민들은 보통 도보나 자기의 소수레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아는 사람의 우차에 편승하기도 한다. 승합버스를 이용하면 龍井村까지 50분, 頭道溝까지 15분 정도 걸리며, 도보 여행 시에는 龍井村까지 3시간 頭道溝까지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縣城인 延吉과는 70滿里가 떨어져 있다. 延吉로 가려면 龍井村으로 가서 다시 북방으로 40滿里를 더 가야 하는데, 승합 버스로 약 1시간 가량 걸린다. 延吉이 중국인 도시로 발달한 것

6) 陽城村의 개황은 『報告書』 341~342쪽을 요약한 것임.

에 비하여, 龍井村은 조선인 도시로 발달하였다. 뿐만이 아니라, 간도의 상업 중심지이기 때문에 조선인이 중심이 된 陽城村으로서는 延吉과의 관계는 거의 없고 주로 龍井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延吉縣의 招墾은 최초 훈춘 招墾總局 밑에서 행하여 졌지만, 光緒 12년 (1886) 局子街 즉 延吉에 招墾總局 南岡分局이 설치되고, 5년 후인 光緒 17년 (1891)에 이르면 훈춘 招墾總局이 아예 延吉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개간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陽城村은 1880年代頃 苑, 曲, 楊氏라는 중국인들이 토지를 불하받고 부근 일대를 밭으로 개간하기 시작하다가, 1900년대 경 조선인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해 들어오면서 수전경작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苑씨의 토지는 같은 중국인 劉씨의 토지가 되어 조사 당시 陽城村의 柳亭村을 형성하여 중국인을 지주로 한 조선인 소작농 부락이 되어 있었다. 曲씨의 토지는 귀화 조선인에게 매각되었다. 이때 조선인들은 佃民制度라는 형태로 토지를 매입하였고, 이를 주체로 조선인들이 모여 陽城村 上村이라는 자소작 부락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延吉현의 행정 구역은 區·鄉村의 형태로 구성되는데, 구와 향은 모두 지역적인 구분 단위인데 반하여 村 (部落 또는 屯으로도 불리움)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자연히 형성된 자연 부락 중심으로 구분된 단위이다. 陽城村은 행정구역 구분식으로 하면 鄉에 해당되는데, 조선인들이 통상 陽城村으로 불려 아예 鄉의 이름은 없고 陽城村의 이름만 있을 따름이다. 이 延吉현 陽城村은 중국인 지주를 중심으로 조선인 자소작농들이 사는 柳亭村 (24호)과 下村 (10호), 조선인으로만 구성 된 上村(24호) 과 中間部落 (10호) 과 東拓部落(13호), 중국인 31호만이 사는 大屯 (31호) 등 6개의 자연 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B屯 (上村) 概況

滿洲國의 실업부 임시 조사국이 원래 조사한 마을은 중국인과 조선인 혼합 마을인 A屯(柳亭村)과 조선인만의 마을인 B屯(上村)인데, 여기서는 본고가 취급하는 上村의 概況에 대해서만 살펴보려 한다. 圖表 1은 上村의 농가 구성 상의 특징을 요약한 것인데, 완전 조선인 마을로서, 압도적 다수가 함경북도 출신으로 이루어진 同鄕村이며, 주로 자소작농으로 구성된 마을이라는 上村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上村은 조선인 농가 24호로 이루어졌는데, 출신지 별로 보면 경남 김해 출신 2호를 제외한 나머지 22호가 함경북도 출신으로서 전체 호수의 91.7%라는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다. 함경북도 중에서도 城津郡 출신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호수가 18호나 되므로, 이 마을은 함경북도 城津郡 同鄕村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19번과 24번 농가는 咸北 城津 출신들인데, 이 마을로 이주한 이유 중의 하나를 동향인이 많이 살기 때문이라고 하였을 정도로 이주 농가들 자체도 이 마을의 同鄕村적인 특성을 잘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滿洲國’ 수립 후인 1934년부터 조사년 도인 1935년 사이에 이주한 농가가 6호인데 모두가 咸北 출신들뿐이고, 조선 남부 등 타지역 출신의 이주자가 1호도 없다. 이것은 아마도 同鄕村으로서 갖게 된 이 마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이 咸北의 이주자들에게는 선호 조건으로 작용하였으나, 다른 지방 출신의 이주자들에게는 오히려 배타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渡滿 이후 上村에 정착한 과정을 보면, 渡滿과 동시에 이 마을에 정착한 농가수는 14호로써 전체 이주 호수의 58% 정도이고, 이 마을에 들어 온 것이 渡滿 이후 두번째 이주의 결과인 농가수는 9호, 세번째 이주 결과인 농가수는 1호이다. 마을에 거주한 在任年수를 보면 10년 이상된 농가수가 9호

인데, 그 중에 20년 이상된 농가도 5호가 있다. 조사년도인 1935년 당시 上村에 거주하던 농가 중 가장 오래 전에 정착한 농가는 1번 농가이다. 1번 농가는 28년 전에 이 마을에 정착하여 소작농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지주가 되어 있는데, 이 농가는 上村이 조선인 마을로 개발되기 시작할 초기인 1900년 - 1910년대 사이에 이 마을에 최초로 정착한 조선인 개척농가의 하나인 셈이다.

圖表 1 延吉縣 陽城村 B屯 (上村) 農家 概況

康德2年 (1935) 現在

농가번호	경영양식	출신지	재주년수(년)	渡滿년대	본둔이주	이주회수
1	지주	咸北城津	28	1908	-	1
2	자작농	咸北城津	23	1913	-	1
3	자작농	咸北城津	25	1920	-	1
4	자작농	咸北城津	9	1920	1927	2
5	자작농	慶南金海	10	1915	1926	2
6	자소작농	咸北城津	8	1919	1928	3
7	자소작농	咸北	1	1935	-	1
8	자소작농	咸北城津	18	1909	1917	2
9	자소작농	咸北城津	23	1913	-	1
10	자소작농	咸北城津	1	1935	-	1
11	자소작농	咸北城津	8	1928	-	1
12	자소작농	咸北城津	23	1913	-	1
13	자소작농	咸北城津	1	1935	-	1
14	소작농	慶南金海	15	1917	1921	2
15	소작농	咸北城津	8	1919	1928	2
16	소작농	咸北城津	17	1919	-	1
17	소작농	咸北城津	2	1919	1934	2
18	소작농	咸北城津	3	1933	-	1
19	소작농	咸北城津	1	1935	-	1
20	소작농	咸北	1	1935	-	1
21	소작농	咸北	1	1925	1935	2
22	소작겸고농	咸北城津	8	1920	1928	2
23	고농	咸北城津	11	1925	-	1
24	잡업	咸北	2	1914	1934	2

* 자 료: 調査表 2 (延吉縣 陽城村 B둔 농가 약력표)

24호로 이루어진 마을 전체의 인구는 142명으로서 戶當 평균 가족수가 5.9명이다. 인구 구성면에서 보면 남녀의 비율이 70명대 72명으로 균등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연령별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젊은 층이 많고 노년층이 적다고 볼 수 있다. 30세까지의 인구는 94명으로 전체의 76.2%가 되고, 45세까지의 인구는 107명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한다. 노동이 가능한 인구를 대략 15세에서 60세까지로 본다면 전 마을 인구의 61%인 87명이 그에 해당한다. 실제 노동 인구를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연소자나 학생, 노인, 병자 등 노동 능력이 없이 부양되어야 하는 인구는 (圖表상의 종속자) 圖表 2에서 보는 바와같이 55명, 즉 39%이고, 노동 능력이 있어 그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인구가 87명 (61%)으로서 우연의 일치를 이루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上村 마을은 젊은이가 많아 견실한 노동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마을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圖表 2 上村 인구 구성표

나이 (세)	남 (명)	여 (명)	합 계 (명)
1 - 14	24	25	49
15 - 30	21	24	45
31 - 45	8	5	13
46 - 60	14	15	29
61 이상	3	3	6
총 계 (명)	70	72	142
종속자 (명)	30	25	55

* 자 료: 調查表 3 (가족 구성표)

농가 경영 양식 별로 보면 지주 1호, 자작농 4호, 자소작농 8호, 소작농 8호, 소작겸 고농 1호, 고농 1호, 잡업 1호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마을 전체 농가 24호 중 자작, 자소작, 소작을 하는 실제 경작 농가는 21호인 셈이

다. 나머지 3호 중 유일한 지주인 1번 농가는 경작을 하지 않는 대신 목공업에 종사하고 있고, 고농으로 분류된 23번 농가는 일공 또는 월공의 형태로 농업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잡업 농가인 24번 농가는 인근 화룡현에서 사금 채굴에 종사하고 있다. 경작 농가 21호 중에 2호가 가족 중의 일부가 타업에 종사하는데, 그 중 14번 농가는 광산 노동에 종사하고 있고, 21번 농가는 장남이 延吉현 春陽에서 상업에 종사하면서 약간의 돈을 송금하여 고향 가족들의 가계를 도와 주고 있다. 농업과 타업을 겸하는 농가가 6호가 되는데, 6번 농가와 7번 농가는 정미업을 동업하고 있으며, 나머지 4호는 모두 마차운반업을 부업으로 삼고 있다. 이색적으로 6번 농가의 가족 중에는 신문기자도 한명 있다. 여자의 경우는 노동 능력이 있는 47명 전원이 가사에 종사하고 있고, 그중 일부인 9명만이 남자들의 농사일을 도와 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여자들의 농업 종사율이 매우 낮은 셈이다. 특히 하게 여자의 역할이 두드러진 농가는 22번 농가이다. 남자는 소작농으로 농사일을 하고, 여자가 가사 외에 연간 20일 정도 아편액을 짜는 일에 종사한다. 그래서 이 농가는 소작 겸 고농으로 분류되고 있다.⁷⁾

3. 土地關係

上村 농가들의 농업 경제 상황과 농촌 사회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농촌의 핵심적인 생산 수단인 土地關係를 살피는 것이다. 이절에서는 농가들의 農業 生産 規模를 耕作地 이용 상태를 통하여 분석해 본 다음, 토지 소유 관계를 살핌으로써 농가 경제의 기반을 살펴 본 다음, 마지막으로 소작관계를 분석하여 조사촌의 사회관계를 살펴보려한다.

7) 『報告書』, 調査表 제3가족구성표 및 제4 피용노동표 참조

가. 農業 生産 規模

農業 生産 規模는 上村 농가들이 자기 소유지이든 차입지이든간에 경작을 위하여 사용하는 耕作地 전체의 면적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부가적으로 그 토지에 어떤 곡물을 파종하는가 하는 耕作地 이용상태도 아울러 살핀다.

圖表 3 陽城村 耕作地 概況

마을	전체호수	경작농가	자작지	소작지	耕作地	戶當耕作地	대부지
柳亭村	25	22	12.9	66.4	69.3	3.15	87.8
上村	24	21	34.4	30.3	64.7	3.08	2.8
중간부락	10	10	25.2	40.4	65.6	6.56	0
대둔	31	19	15.1	41.5	56.6	2.98	116.9
하촌	10	8	1.1	58.1	59.2	7.40	46.6
동척둔	13	13	13.1	85.6	98.7	7.59	0
(합 계)	113	93	101.8	322.3	414.1	4.45	254.1

* 자료: 調査表(陽城村 A, B둔 각각의) 제1표 및 인근 부락 둔의 概況표

* 戶當 耕作地 = 耕作地/경작농가

圖表 3은 上村의 耕作地를 陽城村의 다른 마을의 耕作地와 비교하면서 검토한 것이다. 간도의 1戶當 경지는 대략 3.5町 (4.86 향)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⁸⁾ 陽城村의 戶當 평균 耕作地 4.45향(3.1町)은 간도의 평균치와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를 마을 단위로 살펴보면 柳亭村, 上村, 대둔 부락은 耕作地가 戶當 평균 3향 전후로서, 나머지 3개 마을이 戶當 6 내지 7향인 것에 비하면 반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上村은 경작농가 1戶當 평균 耕作地 면적 3.08향(2.2町)로서 陽城村의 평균 면적이나 간도 전체의 평균 면적보다

8) 滿洲國 軍政部 顧問部, 1936, 『滿洲 共產匪의 研究』의 제4장 「在滿鮮農의 社會的 諸條件」 (이하 軍政部, 「社會的 諸條件」로 약칭), 552쪽.

훨씬 떨어지고 있다. 만주 전체 농가의 戶當 耕作地 면적에 비교하여 볼 때 간도의 조선인 평균 耕作地인 3.5 町도 영세경영이라고 분류되는 것⁹⁾에 비추어 본다면, 戶當 평균 耕作地 면적이 2.2町 밖에 안 되는 上村 마을의 조선인 농가들의 경영 규모는 더욱 영세경영으로 특징 지워진다.

이렇게 소규모의 토지로 경작하는 上村의 조선농들이 耕作地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圖表 4이다. 上村의 耕作地는 圖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가 논이고, 29%가 밭, 나머지 1%는 채소밭으로 활용되고 있다. 耕作地 중에 자작지는 34% 정도가 되고, 소작지는 30% 정도가 되는데, 논과 밭으로 이용되는 비율은 圖表와 같이 어느 경우에도 2/3 이상이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만, 전체 소작지 중 논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76%나 되어 대부분의 소작지는 논으로 이용되기 위하여 차입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조사 대상 기간인 1935년에 실제로 파종한 면적도 벼 파종 면적이 다른 밭작물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69%를 차지하고 있다(調査表 12-1 참조).

일반적으로 간도지방은 밭 경작을 위주로 하는 북조선 이민이 많아, 밭작물이 주요 농업 형태라고 알려져 왔다. 1931년의 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간도 지방의 조선인들은 8%가 논을, 92%가 밭을 경작한다고 보고되고 있다.¹⁰⁾ 그러므로 조사촌인 上村 마을은, 밭 경작이 많은 간도 지방의 일반적인 토지 이용 상태와는 달리, 水稻작 위주의 농촌임을 보여주고 있다. 上村이 水稻작 중심의 마을이 된 것은 우선 자연지리적으로 보아, 마을이 해안하를 끼고 조성된 두도구 평야에 자리잡고 있어서 水稻작에 유리한 지형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는 陽城村 마을의 역사에서 보듯이 초기에 중국인 지주의 토지였을 때는 水稻작이 없었으나, 중국인 지주의 토지를 조선

9) 軍政部, 「社會的 諸條件」, 550~553쪽.

10) 軍政部, 「社會的 諸條件」, 515~516쪽.

인들이 사들여 이 지역을 수전으로 개간하면서부터 陽城村의 일부인 上村도 수전 위주의 경작을 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圖表 4 耕作地 이용상황(단위: 향)

구분	논	비율	보통밭	비율	채소밭	비율	합계
자작지	22.17	65%	11.96	35%	0.24	1%	34.37
소작지	22.91	76%	6.9	23%	0.5	2%	30.31
합계	45.08	70%	18.86	29%	0.74	1%	64.68

* 자 료: 調査表 7 (토지 관계표)

耕作地에 관한 마지막 분석으로서 경영양식별로 耕作地가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려 한다(圖表 6 참조). 耕作地 면에서 볼 때, 자소작농들은 평균 3.51향을 경작하고 있어, 평균 3.81향을 경작하는 자작농과 거의 비슷하다. 이것은 물론 자소작농들이 소유지 즉 자작지 외에 평균 1.21향 정도씩의 토지를 차입하여 소작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작농의 경우에는 평균 2.38향 정도의 토지를 차입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평균 耕作地 면에서 볼 때, 세 그룹의 경작 농가 중 가장 적다. 소작농들의 경작 면적이 이처럼 적으므로 上村 전체의 평균 경작면적이 3.08향에 머물게 되었고, 따라서 간도 전체는 물론 陽城村에서도 戶當耕作地가 작은 마을에 속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작농의 경우, 같은 조선인 소작농이라도 上村 마을의 소작농이 다른 마을의 소작농 보다 평균 耕作地 면적이 적다. 예를 들면, 중국인 지주의 토지를 경작하는 인근 마을인 柳亭村의 경우에는 조선인 소작농의 평균 경작 면적이 3.26향¹¹⁾으로서 上村의 소작농들보다 1.4배 가량된다. 경작면적의 영세성은 경영양식에 무관하게 上村의 조선인 농민들에게 해당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소작농들의 경작 면적 규모가 지

11) 『報告書』, A문 제1 농가개황표 참조

극히 영세한 점이 上村의 특징 중의 하나로 드러난다.

나. 土地 所有 關係

上村의 소유면적 및 토지 이용 상태를 농가별로 종합적으로 일괄한 것이 圖表 5이고, 이를 다시 경영양식별로 분석한 것이 圖表 6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면적이란 실질적 所有熟地 面積을 의미한다. 실질적 소유숙지는 농가가 실제로 자작 또는 대부에 의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한다. 따라서 利用할 수 없는 出典面積은 제외하고, 入典面積은 포함한다.¹²⁾ 上村 마을의 경우 입전지는 총 3.56향으로서 6번 농가 2향, 7번 농가 1향, 10번 농가 0.56향의 입전지를 갖고 있다. 출전지는 어느 농가도 갖고 있지 않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의 호수는 13호로서 전체 마을 호수(24호)의 54.2%를 차지한다. 면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 비율은 비슷하다. 마을의 소유지 전체 면적인 37.2향은 耕作地 전체 면적인 64.7향의 57.5%에 해당한다. (이 소유지 면적 중 수전이 64.5% (23.97향)를 차지하고, 채소밭, 택지 등 극히 일부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가 밭(12.96향)으로 34.8%를 점유하고 있다.) 토지 소유 농가의 개별적 토지 소유량은 편차가 심하다. 가장 적게는 0.56향(9번 자소작 농가)에서 가장 많게는 5.1향(2번 자작농가)에 이르고 있다.

토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거나 부족함을 느끼는 농가 즉 소작농가와 자소작농가는 도합 17호이다. 이는 전체 마을 농가 호수(24호)의 71%에 해당한다. 계급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 70여 퍼센트의 농가들이 지주들과 경제적으로 대립관계에 서 있어, 이 마을의 사회적 특성을 구성하는 한 요소가 된다.

12) 典이란 타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빌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자기의 부동산을 사용하여 수익활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후일에 빌린 돈을 갚으면 그 사용수익권은 없어진다. 이때 빌리는 돈을 典價라고 부른다.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허락하는 것을 출전이라고 하고, 사용수익권을 받는 것을 入典이라고 한다. 入典者는 出典者에 대하여 전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전대차와 다르다. 『報告書』, 4쪽

토지가 토지 소유자 간에 분배된 상황과 토지 이용 상황은 圖表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圖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유토지는 자소작농층(51.4%), 자작농층(41%)에 집중되어 있고, 지주는 7.5%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주의 소유면적인 2.8향은 사실상 마을 전체의 평균 소유면적인 2.86향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세지주임을 보여 주고 있다. 上村이 조선인들만의 자작, 소작농마을이라고 불리고 지주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와같이 지주가 있기는 하지만, 그의 토지소유면적이 영세하고, 따라서 그의 사회경제적 비중이 자연히 미약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圖表 5 농가별 토지 면적 및 이용 상황(향)

농가번호	경영양식	소유면적	대부지	자작지	차입지	耕作地
1	지주	2.80	2.80	-	-	-
2	자작	5.10	-	5.10	-	5.10
3	자작	3.85	-	3.85	-	3.85
4	자작	3.40	-	3.40	-	3.40
5	자작	2.90	-	2.90	-	2.90
6	자소작	4.00	-	4.00	1.50	5.50
7	자소작	4.20	-	4.20	0.80	5.00
8	자소작	4.00	-	4.00	1.00	5.00
9	자소작	0.56	-	0.56	3.00	3.56
10	자소작	1.56	-	1.56	1.00	2.56
11	자소작	2.00	-	2.00	0.33	2.33
12	자소작	1.90	-	1.90	0.30	2.20
13	자소작	0.90	-	0.90	1.00	1.90
14	소작	-	-	-	4.10	4.10
15	소작	-	-	-	4.00	4.00
16	소작	-	-	-	3.00	3.00
17	소작	-	-	-	2.40	2.40
18	소작	-	-	-	2.20	2.20
19	소작	-	-	-	1.45	1.45
20	소작	-	-	-	1.33	1.33
21	소작	-	-	-	1.10	1.10
22	소작고농	-	-	-	1.80	1.80
	합계	37.17	2.80	34.37	30.31	64.68

* 자료: 調査表 7 (토지 관계표)

圖表 6 경영양식별 토지 소유 및 토지 이용 면적 (향)

경영양식	농가수	소유면적 합계	비율(%)	소유면적 (평균)	대부지 (평균)	자작지 (평균)	차입지 (평균)	耕作地 (평균)
지주	1	2.8	7.5	2.8	2.8			
자작	4	15.25	41.0	3.81		3.81		3.81
자소작	8	19.12	51.4	2.39		2.39	1.21	3.51
소작	9(1)*						2.38	2.38
	22	37.17	100	(2.86)	(2.8)	(2.86)	(1.78)	(3.08)

* 자 료: 圖表 5를 재정리

* (1)은 소작에 포함시킨 소작겸고농을 의미한다. 이후 소작농을 9호로 간주할 때는 별도의 지적이 없더라도 소작겸고농을 포함한 농가수입.

토지 소유 그룹 중에서 평균 소유 면적이 가장 넓은 자작농들은 최소 2.9향(5번 농가, 최대 5.1향(2번 농가)으로 평균 3.81향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자소작 농가들의 평균 토지소유 면적은 2.39향으로서 가장 적을 뿐만이 아니라, 편차도 심하여 가장 적을 경우는 0.56향(9번 농가)인데 비하여 가장 많을 경우는 4.2향(7번 농가)에 이르고 있다. 자소작농 8호 중에서 3개의 농가 즉 6번, 7번, 8번 농가는 모두 4향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작농 2번 농가만이 이들보다 소유 면적이 넓은 뿐이다. 나머지 5호의 자소작농가는 모두 2향 미만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처럼 경영양식별로 다소의 토지 소유 규모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토지 소유 농가의 戶當 평균 토지는 2.86향으로서 간도 조선 농민들의 특정한 과소농적 토지 소유 상태를 여실히 반영하여 주고 있다.

다. 小作 關係

소작지를 차입하여 경작하는 농가는 순전한 소작농 이외에 자소작농과 소작고농을 합하여 모두 17호로서 전 마을 호수의 71%에 해당한다. 따라

서 소작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한다는 것은 곧 이 마을의 대다수 농가가 처하고 있었던 사회경제적인 객관적 조건을 조명하는 일이 된다. 소작료, 소작기간 등 소작조건이 어떠했는가 하는 문제는 소작인의 경제적 생활을 좌우하는 조건이 되며,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가 순전히 경제적인 관계에 그치는가 아니면 경제외적인 어떤 의무도 지고 있는가는 소작인의 사회 생활을 규정지우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¹³⁾ 본절에서는 소작관계를 조사한 표(제10 소작관계표)를 기본자료로 하여 우선 소작인과 지주가 소작지를 매개로 하여 어떤 양태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다음으로 소작 조건을 소작료, 소작양식, 소작기간, 납입시기와 방법 등의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지주-소작 관계

圖表 7은 소작지가 어떤 지주들로부터 차입되었는지를 살피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圖表에서 지주번호란 필자가 편의상 調査表를 토대로 하여 붙인 번호이다. 소작지는 上村의 자소작농 8호, 소작농 8호, 소작 겸 고농 1호 도합 17호의 농가에 의해서 경작되고 있다. 앞서 살핀 바와같이 자소작농들은 戶當 평균 1.21향 정도를 차입하여 소작하고 있으며, 소작농(소작고농 포함)들은 戶當 평균 2.38향을 소작하고 있다(圖表 6참조).

13) 1930년대 제만일본인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만주 사회의 성격, 봉건적 사회인가, 반봉건적 사회인가의 핵심적인 기준의 하나는 지주와 소작인간의 관계가 농노적 지배였던가 아니냐 하는 문제에 집약되어 있었다. 中兼和津次, 1981, 앞의 책, 14~18쪽.

圖表 7 소작자- 지주 관계

농가번호	경영양식		소작지			지 주	
		종류	등급	면적	지주번호	소재지	직업
6	자소작	논	중	1	8	陽城村(하촌)	지주
		밭	중	0.5	12	용정촌	회사(동척)
7	자소작	논	중	0.8	7	陽城村(하촌)	지주
8	자소작	논	상	1	2	두도구	지주
9	자소작	논	중	1.5	2		
		밭	중	1.5	2		
10	자소작	논	중	1	7	陽城村(하촌)	지주
11	자소작	논	상	0.33	3	두도구	지주
12	자소작	논	하	0.3	3	두도구	지주
13	자소작	논	중	1	3	두도구	지주
14	소작	논	상	1	4	조양천	공업
			중	1.4	4		
		밭	중	1.7	4		
15	소작	논	중	3	5	두도구	상업
		밭	중	1	5		
16	소작	논	상	1.5	5		
		밭	중	1.5	5		
17	소작	논	중	1.5	6	두도구	지주
		논	하	0.9	7	陽城村(하촌)	지주
18	소작	논	하	1.1	7		
		논	하	0.9	8	陽城村	지주
		밭	하	0.2	8		
19	소작	밭	중	1	1	촌 내부	지주
		논	상	0.45	9	길림	지주
20	소작	논	하	1.33	10	陽城村	지주자작
21	소작	논	상	1.1	11	용정촌	지주
22	소작고농	논	중	1.8	1	촌 내부	지주
		합	계:	30.31	(단위: 향)		

* 자 료: 調査表 10 (소작 관계표)

소작 총경지 면적은 30.31향이며 이 중 마을 외부 지주로부터의 소작지는 27.51향이다. 이를 30.31향으로 나누면 총 소작 경지 중 외부 지주 소작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나오는데, 그 비중은 90.7%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上村의 지주-소작 관계에 있어 가장 뚜렷한 특징은 <촌외 지주의 조선인 소작농에 대한 강력한 지배권의 존재>라는 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토지를 대부해 준 지주들은 모두 12 호(동척회사 1포함)인데, 그 중 재촌 지주는 1호를 제외한 11호가 촌외지주들로서 陽城村의 다른 마을이나, 용정촌, 두도구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그들 중에는 농업 이외의 종사자들도 2호(동척 제외)가 있다. 비율은 그리 높지 않으나, 도시에 거주하는 부채지주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재만 조선인 농촌의 대립관계가 농촌 내부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¹⁴⁾

調査表에서는 지주들을 민족별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지주들의 민족별 구성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上村의 인근부락에 관한 調査表에서를 살펴보면, 陽城村 전체에서 지주는 만주인과 동척(일본인)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고, 조선인 지주는 上村의 1번 농가 1호뿐이다. 따라서 圖表 7에서 陽城村(하촌 또는 표기안된 마을)에 거주하는 지주들로 표기된 경우는 그들이 모두 중국인 지주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다른 지역 거주 지주들이 조선인인지 중국인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어 민족별로 차지하는 지주의 비중을 분석할 수는 없지만, 上村 소작지의 지주들이 조선인, 중국인, 그리고 동척으로 대표되는 일본인들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上村 역시 간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주-소작간의 계급 대립이 민족간의 대립과 겹쳐진 이중적인 대립 구조 하에 처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14) 이형찬, 1998, 앞의 논문, 264쪽.

圖表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작인이 소작지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지주와 맺은 소작 계약 건수는 총 27건으로서 소작농가 戶當 평균 1.6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를 경영양식별로 살펴보면, 자소작농의 경우에는 戶當 1.3건밖에 안되는데, 소작농의 경우에는 戶當 1.9건에 달한다. 계약건수에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울지 모른다. 왜냐하면, 자소작농은 자작지를 보충하기 위하여 소량의 토지를 소작지로 차입하는데 반하여, 소작농은 전체 耕作地를 소작지로 차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작지의 면적이나 종류가 많아질 수 밖에 없고, 그에따라 소작계약 건水稻 많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작농의 경우는 계약이 3건인 경우가 2호, 2건인 경우가 4호, 1건이 3호로서 소작계약을 2건 이상 맺은 경우가 소작농가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소작 계약 건수가 2 내지 3건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소작지가 조각조각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이 곧 한 소작인이 여러 지주와 계약을 맺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戶當 평균 계약 지주수는 전체적으로 보아 평균 1.2명인데, 자소작농의 경우(1.1명)나 소작농의 경우(1.3명)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체 소작인이 계약을 맺은 지주의 수는 대부분이 1명이고, 지주 2명과 계약을 맺은 경우는 17개 농가중 4개 농가(23.5%)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계약 지주수가 적으면서 계약건수가 많다는 것은 같은 지주로부터 여러 종류의 소작지를 차입하였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점은 특히 소작농의 경우에 잘 들어맞는다. 예를들면 14번 농가는 조양천에 사는 1명의 지주로부터 토지의 등급과 종류에 따라 모두 3건의 계약을 맺고 있고, 15번과 16번 농가들도 지주는 한명인데 2종류씩의 소작 계약을 맺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圖表 8 소작계약 건수 및 계약 지주수

구분	호수	계약 건수	평균 계약 건수	계약 지주수 (연인원)	평균 계약 지주수
자소작	8	10	1.3	9	1.1
소작	9	17	1.9	12	1.3
합계	17	27	1.6	21	1.2

* 자 료 : 調査表 10 (소작 관계표)

소작인이 1명 내지 2명의 지주와 소작계약을 맺고 있는 것에 반하여, 지주는 보다 많은 수의 소작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 12명의 지주가 27건의 계약을 맺었으므로, 지주 당 평균 2.3건이 되고, 계약을 맺은 소작인은 연인원 21명으로서 지주 당 평균 1.8명에 해당한다. 이것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소수의 지주에게 계약 건수나 계약 소작인수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즉, 계약 건수 면에서는 지주번호 2, 5, 7번이 4 내지 5건씩 도합 14건을 계약하여 전체 계약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계약 소작인수에 있어서도 2번과 7번 지주가 각각 4 내지 5명씩 도합 9명의 소작인과 계약함으로써 전체의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소작관계가 소수 지주에 집중되는 현상은 대부 면적면에서도 나타난다. 4향 이상을 대부하고 있는 지주들이 4명이 있는데, 지주 2번이 5.3향, 4번이 4.1향, 5번이 7향, 7번이 4.8향으로 도합 21.2향으로서 전체 소작지 30.3향의 70%정도를 이들 네 명의 지주(전 지주 수의 1/3)가 대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上村의 소작지는 계약 건수나, 소작인수나, 면적에 있어 소수의 지주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수 지주들의 민족 성분을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런데 인근부락 調査表를 통하여 최소한 7번 지주 于씨는 陽城村 하촌 마을의 중국인 지주라는 것은 알 수 있다. 나머지를 성씨로 보면 2번은 于씨, 4번은 李씨, 5번은 朱씨로, 적어도 2번과 5번은 중국인 지주

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비록 개연성에 바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上村의 소작지는 상당 부분이 촌외 지주인 중국인 지주들에 의하여 장악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¹⁵⁾

2) 小作條件

소작농의 경제 생활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소작 조건이다. 소작 조건 중에서도 특히 소작료와 소작기간이 소작농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지금부터는 조사촌인 上村의 소작료와 소작 기간을 위시하여 소작 계약시 구두 또는 문서로 이루어진 제반 소작 조건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소작인의 가장 중요한 부담인 소작료를 말하기에 앞서 만주에서 이루어지던 소작형태를 우선 살펴보려 한다. 통상적인 소작형태는 소작인이 자기의 자본(농기구, 농우 등)과 노동에 의하여 지주로부터 빌린 토지를 경작하고, 수확물의 일정액 (또는 일정률)을 현물 내지는 금전으로 지대 즉 소작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만주 농촌에서는 이러한 통상적인 소작 형태 외에 방청(榜靑)이라는 소작 형태가 있었다. 방청소작은 노동 이외의 모든 생산수단과 때로는 생활수단도 지주가 소작인에게 제공하고, 대신 소작인은 수확물의 일정 부분을 현물로서 지주에게 지불하는데, 당연히 통상적인 소작료율보다 높은 소작료율을 납부하게 되는 제도이다.¹⁶⁾ 다시 말하면, 방청소작은 빈궁한 농민들이 자신의 육체적 노동력 이외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의 모든 것을 지주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때 흔히 나타나는

15) 이것은 上村의 소작지만에 관한 주장이다. 上村의 경작지는 소작지가 30.3향으로서 전체 (64.7향)의 1/2에 조금 못 미치고, 자작지가 34.4향으로 절반을 약간 넘는다. 자작지는 모두 조선농들의 소유지임으로 소작지에 대한 중국인 지주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여 그것이 곧 마을 전체에 대한 중국인 지주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 없다.

16) 中兼和津次, 1981, 앞의 책, 16쪽

소작형태로서, 만주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생겨난 분익소작의 한 형태인 것이다. 조사촌에서는 모두가 통상적인 소작 형태를 취하고 있고, 방청소작은 한 건도 없다.

소작 양식 즉 소작료 납부 형태는 일차적으로 현물을 납부하는 물납과 돈으로 납부하는 금납으로 구분이 되고, 다음으로는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량을 납부하는 定額 (또는 定租) 과 생산량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定率 (또는 分益)에 따라 구분한다. 조사촌의 소작 계약 27건 중 85%에 달하는 23건이 物納分租 즉 분익소작제를 택하고 있으며,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4건이 金納定租라는 소작양식을 택하고 있다.

上村 소작농들은 물납의 경우 수확량의 절반을 소작료로 납부하였다. 즉, 물납 분조의 경우 토지의 종류나 등급에 관계없이 생산량의 절반을 소작료로 납부하는 계약을 맺고 있는데, 수전일 경우에는 벼나 백미 그리고 벧단을 현물로서 납부하고, 밭을 소작할 경우에는 파종 곡물에 따라 대두, 마령서, 포미, 곡자 등을 현물로서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주에서는 토지가 열악할 경우에는 2:8 비율, 즉 소작료가 생산량의 2할이 되는 분익제도도 시행되는데,¹⁷⁾ 上村의 경우에는 이런 예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금납정조는 수확량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금액을 지주에게 지불하는 것인데, 上村에서 이러한 소작양식을 요구한 지주는 동척 (1건)과 중국인 지주 1명 (3건)이다. 실납액을 보면 동척은 7번 농가에 밭 0.5향을 소작시키고 8.88원, 陽城村 하촌에 거주하는 중국인 지주가 세 농가에 논 2.8향을 나누어 대여한 후 1향 당 30원씩 도합 84원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지대율 또는 소작료율은 소작료를 소작면적으로 나누는 것이다. 調査表 상으로는 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정률 소작의 경우 생산량의 50%

17) 中兼和津次, 1981, 앞의 책, 70쪽

를 소작료로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작농이 생산 가능한 쌀과 밭작물을 소작면적으로 나누면 대략적인 이 마을의 평균지대율로 간주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1935년 실제로 파종한 면적은 소작면적보다 약간 적다. 따라서 모든 소작면적을 다 파종하였을 경우의 수확량은 추정할 수 밖에 없는데, 실제 파종 면적당 수확량을 소작면적에 곱하여서 추정치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圖表 9의 소작면적 수확량이다. 이 추정 수확량의 1/2을 소작료로 간주하여서 소작면적으로 나누어 추정 지대율을 계산하였다. (단, 圖表에서 말하는 밭작물은 주요한 현물 납부 작물인 黃豆, 包米, 谷子를 합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와같은 방식으로 추정치를 계산하여 본 결과 上村의 정률 지대율은 논 11.5 석/향, 밭 2.89 석/향이 된다. 정액 소작의 경우 지대율의 계산은 4건밖에 없으며 금납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다. 즉, 上村 소작지의 경우 밭은 향당 17.8원, 논은 향당 30원의 소작료율이 된다.

圖表 9 추정 정률 지대율

	파종면적 (향)	수확량 (석)	향당 수확량	소작면적 (향)	소작면적 수확량(석)	소작료 (석)	지대율 (석/향)
水稻	13.78	316.89	23.00	15.98	367.54	183.77	11.5
밭작물	3.9	22.54	5.78	5.4	31.21	15.61	2.89

* 자 료: 調査表 12 (작물별 파종 면적 및 수량표)와 圖表 7 (소작지-지주 관계)

소작료와 아울러 소작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관련이 깊은 소작 조건은 소작 기간이다. 上村 소작지는 총 계약 건수 27건 중 1년 기한의 정기 소작이 15건으로 56%, 不定期 소작이 12건으로 44%를 차지하고 있다. 간도성 공서에 의한 간도 지방 조선인의 소작관계 조사에 의하면, 정기소작이 70%이고, 그 중에 1년 계약이 64%, 3년 이상 계약은 극히 희박하다고 한다.¹⁸⁾

이러한 간도의 일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 - 3년 계약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부정기 소작이 평균치보다 더 높다는 점에서 上村 소작인들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 하에서 영농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다.

소작료와 소작 기간 외의 다른 부수적인 소작 조건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작계약은 대부분이 구두로 하며, 보증서나 보증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증서나 보증인을 요구한 경우는 27건 중 3건 (11%)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3건은 모두 금납정조의 경우에만 해당되었다.

2) 납입시기는 일률적이지 않으나, 현물 소작료의 경우는 대체로 9월에서 11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추수 후에 가서야 소작료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금납의 경우는 총 4건 중 3건(논 소작지)은 계약 시기인 4월과 5월에 납부하고, 1건 (밭 소작지)은 발작물 추수후인 7월에 납부하고 있다.

3) 납입방법은 소작인이 현물을 지주 집으로 운반하여 납입하는데, 벼는 탈곡하여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외적으로 관리인 집으로 납입하는 경우가 2건이 있고, 지주가 소작인 집에 와서 소작료를 받아 가는 경우가 1건이 보인다.

4) 지주에 대하여 소작인이 지는 의무는 최소한 調査表 상에서는 소작료 외에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調査表를 그대로 믿는다면 上村의 소작농들은 소작료라는 경제적 의무외에 지주 집의 보수나 경조사에 무료 봉사를 하는 것과 같은 경제외적인 의무를 지고 있지 않는 셈이다.

5) 조세공과금의 분담은 지주가 소작지에 대한 국세와 현세 전부, 담비(畓

費) 전부와 糧米糧監의 절반을 부담하고, 소작인은 양미양감의 절반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延吉縣의 세율표를 보면, 오래된 수전과 새로 조성된 수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답비는 매향 당 2 내지 2.2원, 량미는 매향 당 백미 0.8두 내지 2.2두, 량감비는 매향 당 벧짚 30 내지 40 단을 세금으로 내야한다.¹⁹⁾ 그러므로 수전을 소작하는 上村의 조선 농민들은 소작료 외에 세금으로 매향 당 량미로서 백미 0.4두에서 1.1두, 량감비로서 매향 당 벧짚 15 내지 20단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3. 農業生産 및 販賣

이 절에서는 조사 마을의 경작 농가들이 조사년도인 1935년에 실제로 파종한 면적, 곡물의 종류 및 수확량을 알아보고, 다음은 수확물 중 시장에 내다 판 농산물 판매량 및 수입에 관하여 살펴보려 한다.

가. 播種面積 및 收穫量

上村의 경작농가 21호가 조사 대상 년도인 1935년에 실제로 파종한 면적은 65.34향인데, 총파종면적의 3% 이상 면적에 파종한 작물을 이 마을의 주요 작물로 간주하고 그 수확량을 개별 농가별로 보면 圖表 10과 같다. 그 중 작물별 파종 면적 비율을 나타낸 것이 圖表 11인데, 水稻가 69%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밭 작물들인데 그 비율은 圖表와 같다. 밭작물 중 가장 많이 심은 것이 곡자로서 총파종면적의 11%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황두와 소채가 각각 5%, 罌粟이 4%, 포미가 3% 순이다. 만주

19) 『報告書』, “延吉縣 도량형, 지적, 세율” 향 참조.

의 중국인 농가에서 가장 많이 경작하던 밭작물은 대두나 고량 등인데, 上村에서는 이런 작물들을 전혀 재배하고 있지 않다.

圖表 11작물 별 파종 면적 비율

水稻	黃豆	包米	谷子	粟粟	蔬菜	기타	합계
69%	5%	3%	11%	4%	5%	3%	100%

* 자 료: 圖表 10에서 재작성

水稻作은 파종면적 비율로만 높은 것이 아니라, 참여 농가수 면으로 보아도 다른 작물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水稻作에는 上村의 경작농가들 21호 모두가 100% 참여하고 있고, 이에 비하여 다른 밭작물들은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호 전후의 농가들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上村의 주작물은 단연코 水稻라고 해야 할 것이다.

水稻의 파종 면적을 경영양식에 따라 검토하여 보면, 圖表 12와 같이 나타난다. 전체 농가의 戶當 水稻작 평균 면적은 2.16향인데, 그 중 자작농은 2.8향으로 가장 많고, 소작농이 1.8향으로 가장 작다. 주작물이 水稻인데 경작 면적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주요 농업 수입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므로 이것만 보아도 경영양식별 농업 수입의 경향을 대략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水稻 파종면적을 총파종면적으로 나눈 비율은 농가들이 水稻작에 투자하는 耕作地 비율을 의미한다. 이 水稻 耕作地 투자 비율은 소작농이 75%로 가장 높고, 자작농이 비슷한 그 수준인 74%이며, 자소작층이 뚝 떨어져 62%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바꾸어서 말하면, 자소작농층은 水稻작이 아닌 밭작물에 다른 농민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면적 (38%)을 할애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圖表12 경영양식별 水稻 收穫面積

경영양식	총 농가수	과중 농가수	총 과중면적	水稻 과중면적	비율(%)	水稻戶當 면적
자작농	4	4	15.25	11.35	74	2.84
자소작농	8	8	28.45	17.74	62	2.22
소작농	9	9	21.64	16.18	75	1.80
합계	21	21	65.34	45.27	69	2.16

* 자 료: 圖表10에서 재작성

주요 과중 발작물 중 이색적이라서 얼른 눈에 띄는 작물이 罌粟 즉 아편이다. 당시 일본의 괴뢰정권이었던 滿洲國은 ‘수요의 관계상’이라는 이유로 아편 전매 제도를 건국 초기부터 실시하고 있었다. 만주산 아편 중에서 간도 지방의 아편은 일찍부터 품질이 우수하다고 정평이 나 있었다고 한다. 1934년 통계에 의하면 간도성 전체에 정부가 공인한 재배면적은 4,454町에 달하였는데, 실제 재배 면적은 그보다 25% 정도가 더 많은 5,548町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²⁰⁾ 이 아편 전매 제도는, 명분이야 어떠하든지, 고가의 아편 판매를 정부가 독점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거주민들의 건강과 경제적 파탄 등은 도외시한 채 정부 수입만 올리려는 이와 같은 아편 전매 제도는 일제가 만주를 장악한 후 전개하였던 제국주의 정책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손꼽힐 것이다. 간도 지방에서의 아편재배가 滿洲國 정부의 공인 또는 공공연한 묵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간도지방에 거주하는 조선농들도 아편을 재배할 가능성이 높는데, 그 가능성은 조선농으로만 구성된 上村에서 상당량의 아편이 재배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하여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²⁰⁾ 南滿洲鐵道株式會社 總務部 資料課, 1936, 『間島における 農業機構の 概要』大連: 南滿洲鐵道株式會社, 43쪽.

圖表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上村의 아편 재배 농가는 모두 8개 농가로서 이들은 2.63향에 罌粟을 파종하여 도합290.5량을 수확하였다. 후술하겠지만, 수확된 아편은 전량 매각되었고, 매각 수입은 마을 농가의 전체 농산물 매각액의 15%를 차지하고 있었다. 마을 전체 파종면적의 4%밖에 되지 않는 밭에서 이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아편이 대단히 높은 수익성 작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셈이다.

아편 재배 농가를 계층별로 보면 자소작농의 참여 비율이 가장 높다. 자소작농 8호 중에서 60%가 넘는 5호가 罌粟을 파종하였고, 이들이 파종한 밭의 총면적은 10.7향인데, 그 중에 25% 이상을 아편 재배 면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아편 파종면적을 총 파종면적으로 나눈 토지 투자 비율도 7.5%로서 다른 농가 계층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戶當 평균 아편 재배 면적도 0.4향으로 다른 계층 아편 재배 농가들의 戶當 평균 면적보다 2배 내지는 3배에 이른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上村 자소작농층의 특징은 다른 계층보다 水稻작에 대한 경작토지 투자 비율이 약간 낮고, 대신에 밭작물 耕作地에 대한 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아편 재배에 많은 비중을 두는 농가군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

圖表 13 경영 양식별 罌粟 파종 면적

경영양식	총 농가수	파종 농가수	총파종면적	罌粟파종면적 (향)	비율(%)	罌粟戶當면적 (향)
자작농	4	1	15.25	0.2	1.3	0.20
자소작농	8	5	28.45	2.13	7.5	0.43
소작농	9	2	21.64	0.3	1.4	0.15
합계	21	8	65.34	2.63	4.0	0.33

* 자 료: 圖表 10에서 제작성

지금까지는 파종 면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다음에는 주요 작물별 총생산량과 해당 생산량에 관하여 알아보자. 圖表 10에 보이는 바와 같이 上村의 주작물인 水稻의 총생산량은 1,087석으로써, 이를 파종면적으로 나누면 1畧당 24석의 생산량이 된다. 개별 농가별로 보면, 1畧당 수확량이 가장 높은 농가는 21번 농가로서 1畧당 41석을 수확하였다. 반면에 13번 농가는 파종면적 1畧에서 수확을 하나도 할 수 없었던 농가로 나타나고 있고, 9번 농가도 1畧당 4.4석 정도의 극히 저조한 수확량을 기록하고 있다. 1畧당생산량으로 전체 농가군을 나누어 보면, 평균치가 안되는 20석 미만의 농가가 9호, 20석 이상 30석 미만의 농가가 6호, 30석 이상의 농가가 6호로서 생산 능력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농가별 1畧당 생산량의 차이는 토지의 등급이나 생산 기술의 차이등에서 연유한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마을 전체로 보았을 때 水稻작의 단위면적당 생산량 즉 토지생산성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즉, 1畧은 0.72町이므로 上村 수전 농가는 町당 33.3석을 생산하는 셈이 되는데, 재만 조선농들의 水稻작은 町당 평균 생산량이 26석 정도인 것²¹⁾에 비하면 上村의 수전경작농들의 단위면적당 7석여를 더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주요 밭작물의 생산량은 圖表 10에서 보는 바와같이 黃豆 26石, 포미 19石, 곡자 54石 정도를 생산하였고, 粟 290兩을 생산하였다. ²²⁾황두, 포미, 곡자를 이 마을의 대표적인 밭작물이라 간주하면, 이들 작물들의 총생산량은 약 100석 가량이 된다. 이것을 작부면적 12.6畧으로 나누면 1畧당 생산량은 즉 밭작물의 평균 토지 생산성은 7.9석 정도로 추정될 수 있다. 봉천성 이수현 表家유방둔의 경우 중국인 농민들이 파종하였던 보통밭작물은

21) 滿鐵調査部, 1941, 『在滿鮮農ノ移住入植過程ト水田經營形態』, 198쪽.

22) 圖表 10에 있는 바와같이 소재는 파종 면적을 알 수 있으나, 수확량은 조사가 되지 않아 총생산량이라든지, 1畧당 생산량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적 밭작물 범주에서 제외시켰다.

天地(1천지는 약 1항) 당 8.4석으로 조사되었다.²³⁾ 이것과 비교하여 볼 때, 上村의 밭작물의 토지 생산성은 다른 지역의 밭작물 토지생산성과 비교하여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粟粟은 생산량을 셈하는 단위가 달라 다른 작물들과 비교가 안 되므로 독자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데, 조사 報告書에 의하면 粟粟의 생산량은 290.5량으로서 토지 생산성은 110.5 兩/항, 즉 1町당 153.5兩에 해당한다. 1934년 간도성 전체의 粟粟 과 중면적은 5,548町, 생산량이 394,621兩임으로 町당 생산량은 71.1량이다.²⁴⁾ 그러므로 上村의 粟粟 재배 농가는 평균 토지 생산성 면에서 볼 때 간도성 전체의 그것보다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이와 같이 생산된 농산물은 어떤 작물들이 어느만큼 시장에 판매되었는지를 알아보자.

나. 農産物 賣却

上村의 농가들이 매각한 농산물은 조사된 바에 의하면, 水稻와 황두, 粟粟과 백채 밖에 없다. 수확된 다른 작물들, 예컨대 포미나 곡자 등은 全量 각 재배 농가들의 집에서 식량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圖表14는 개별농가별로 농산물을 매각한 상황을 정리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작물별 매각액을 정리한 것이 圖表 15이다. 마을 전체의 농산물 매각액은 2241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 水稻 매각액이 가장 많아 전체 매각액의 79 %에 해당하는 1779원을 차지한다. 그 다음이 粟粟 매각액으로서 전체 매각액의 15%를 차지하는 345.5원의 소득을 기록하고 있다. 백채의 매각액은 88원, 황두는 28.8원으로써 각각 전체 매각액의 3.9%와 1.3% 밖에 되지 않는다. 水稻와 粟粟 매각액을 합치면 전체 매각액의 94.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농산물

²³⁾ 中兼和津次, 1981, 앞의 책, 82쪽

²⁴⁾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36, 앞의 책, 43쪽.

매각액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 마을의 주요 농업 수입원은 水稻와 粟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매각 농가 숫자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황두와 백채를 매각한 농가는 1 내지 2개 농가 밖에 되지 않는데 반하여, 粟은 7개 농가이고 水稻는 16개 농가로서 훨씬 많은 수의 농가들이 粟과 水稻를 매각하고 있다.

圖表 15 매각 작물별 매각액과 비율

매각작물	합계(원)	水稻	비율(%)	황두	비율(%)	粟	비율(%)	백채	비율(%)
매각액	2241.68	1779.05	79.4	28.83	1.3	345.5	15.4	88.3	3.9

* 자 료: 圖表 14에서 제작성

이들 작물을 매각하는 장소는 용정촌과 두도구에 국한되고 있으며, 매각 방법은 모두 자신이 매각 장소로 가져가는 자가운반이다. 자가 운반의 경우가 지역에 트럭 등 특별한 운송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형편이므로, 마차 수송이 대종을 이룬다고 보여진다. 이 마을의 농가 중 부업으로 마차 운반을 하는 농가들이 4호 정도가 있는데, 아마도 이들이 농산물 운송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것이다. 매각 장소는 곡물별로 완전히 구분된다. 水稻는 전량이 용정 시장까지 운반하여 판매한다. 황두도 마찬가지로 용정 시장에 자가 운반하여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다. 오래전 부터 간도의 쌀과 콩의 집산지로 알려진 용정을 가까이에 둔 上村 마을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쌀과 콩 이외의 다른 작물들은 두도구에 내다 팔고 있다. 예컨대, 백채는 두도구 시장에 자가운반하여 매각하고 있으며, 粟은 두도구에 있는 수납처로 가져가는 것이다.

매각 시기는 水稻의 경우 수확이 끝난 다음인 10월부터 12월 사이가 가장 일반적이고, 그 다음 해1월에서 4월까지도 내다파는 경우가 때때로 보인

다. 황두는 매각 농가가 1 농가 밖에 없는데, 12월에 두번에 걸쳐 내다 팔았다. 粟은 주로 6월에서 8월 사이에 수납처에 수납시키고 있으며, 백채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매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上村의 농산물 매각시기는 대체로 매각 작물의 수확 시기에 따라 결정되고 있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調査表 13 참조)

마지막으로 작물의 商品化率을 살펴보자. 본고에서는 마을의 주요 농업 수입원이 되고 있는 水稻와 粟의 商品化率에 국한시켜 살펴보려 한다. 나머지 작물 즉 황두와 백채의 경우 매각 농가 水稻 적고, 실제 수입원으로서도 미미한 역할 밖에 하지 않기 때문이다. 水稻작은 마을의 경작 농가 전체가 참여하였는데, 水稻를 매각한 농가는 실제 水稻를 경작 농가 21호 중 15호이고, 여기에 소작료로 받은 水稻를 매각한 지주 1호를 포함하여 16개 농가이다. 이들이 매각한 水稻의 총량이 150석인데, 마을 전체의 水稻 수확량은 전술한 바와 같이 1087석이었다. 작물의 商品化率은 총수확량을 매각량으로 나눈 것인데, 기계적으로 이 공식을 적용하면, 上村의 水稻 商品化率은 14%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수전의 경우 전체 수전(45.8항) 중 소작지가 76%(22.9항)에 해당하고, 수전 소작지 중 촌외 지주로부터 차입한 토지가 21.1항(92%)에 달한다는 이 마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촌외 지주가 소작료로 받는 水稻를 어떻게 처분하였는지, 즉 자가 식량으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매각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일단 매각하였다고 가정하고 上村의 水稻 商品化率을 다시 계산하여 보자.

전체 수확량 중에서 소작료를 뺀 나머지를 상품화 가능량이라고 볼 때, 소작농의 경우는절반에 해당하는 158.45석이 가능량이 된다. 그런데 자작겸 소작농의 경우 수전을 소작하고 지불한 소작료는 따로 조사되어 있지 않으므로, 몇가지 가정에 의하여 개략적인 수치를 산정할 수 밖에 없다. 우선 자 소작농의 경우 수전 파종면적은 17.74항, 그 중 소작지는 6.3항으로 35.5%

를 차지한다. 다음 이 비율에 따라 자소작농의 총수확량 403.99석을 나누어, 자소작농의 소작지에서 생산한 水稻 수확량을 147.47석이 가정한다. 이 중 소작료로 절반을 지불하였다고 가정하면 자소작농의 소작지에서 수확한 水稻 중 상품화 가능량은 71.74석이 될 것이다. 이런 가정 하에 소작지와 자작지별 상품화 가능량을 산정하여 商品化率을 구하면 다음 圖表 16과 같이 된다. 우선 마을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水稻 商品化率은 19.6%가 된다. 이때 매각량에는 지주가 매각한 3.6석도 포함하였다. 다음 자작지에서 생산된 水稻의 商品化率은 18.4%가 되고, 소작지에서 생산된 水稻의 商品化率은 21%가 된다. 다른 조사촌이었으며 인근 부락인 柳亭村에 거주하는 조선인 소작농들의 경우, 총 水稻 생산량은 855.1석, 이 중 소작료로 절반을 채하고, 나머지 매각 가능량을 427석이라고 할 때, 실제 매각량은 151석이 되어 水稻 商品化率이 35.4%에 이른다.²⁵⁾ 인근 柳亭村의 소작농들의 水稻 商品化率이 上村의 소작지에서 생산된 水稻의 商品化率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둘을 비교해 볼 때 上村의 水稻 商品化率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재만 조선농가의 水稻 商品化率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²⁶⁾ 이를 토대로 재만 조선농 사회에 “상품경제의 침투가 강하고, 상업 고리대 자본의 활동 분야가 넓고 깊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²⁷⁾ 調査表를 토대로 한 필자의 가정과 분석에 착오가 없다면, 上村에서 보이는 20% 전후의 水稻 商品化率은 재만 선농의 일반적인 水稻 상품화 경향에서 볼 때 매우 예외적인 사례로 손꼽아야 할 것이다.

25) 이형찬, 1998, 앞의 논문, 266쪽.

26) 예컨대, 1930년에 중북부 만주에 거주하던 조선인 소작 농가 201호를 실시한 이훈구씨의 주장에 의하면, 쌀은 자가 소비용이 25% 정도이고, 판매하는 것이 75%라고 하였다. 軍政部, 「社會的 諸條件」, 530-531쪽

27) 軍政部, 「社會的 諸條件」, 541쪽.

圖表 16 水稻 商品化率

	총생산량(석)	상품화 가능량(석)	매각량(석)	商品化率(%)
소작지	516.46	230.18	48.39	21.0
자작지	560.5	536.5	98.45	18.4
합 계	1087.06	766.68	150.45* (3.61)	19.6

* 매각량은 ()의 지주 매각량을 포함한 것임

粟粟의 경우 商品化率이 水稻와 판이하게 다를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7개 농가에서 2.6향의 밭에 粟粟을 파종하였는데, 총수확량은 290.5량이었다. 매각량은 295.2량으로서 수확량보다 5량 정도가 더 많다. 商品化率은 102%인 셈이다. 이러한 약간의 차이가 생긴 것은 15번 농가가 72.6량 생산에 66량을 판매하여 6.6량 정도를 남겼고, 반면에 2번 농가가 57량을 생산하였는데, 매각량은 68.5량으로써 11.5량 정도를 더 많이 팔았기 때문이다. 2번 농가의 경우 소량이지만 지난해의 생산량 중 일부 남았던 재고를 조사년도에 팔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극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무시한다면, 粟粟은 생산량 전량이 상품화되었던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上村의 일부 농가들은 농가 소득을 올리는 방법의 하나로써, 전량 내다 팔 것을 전제로 한 粟粟 재배를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上村의 조선 농가들에 대한 상품 경제의 침투는 水稻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粟粟을 통해서 더 많이 들어오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5. 家計費

농가의 家計費(生活費)를 정확하게 산출하려면 현금 지출 이외에 현물(비현금) 지출도 현금으로 환산하여 포함되어야 한다. 구 봉천성에 거주하던

조선인 수전 소작농 6호의 가계비를 이런 식으로 집계하였을 때, 가계비의 지출 총액의 76%가 현금 지출이었고, 23% 정도가 비현금 지출이었다.²⁸⁾ 현금 지출만을 가계비로 계산하면 실제 농가가 생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보다 1/4정도가 덜 포함된다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이용하여 분석하려는 調査表는「生活費現銀支出表」 즉, 현금 지출표이기 때문에 실제의 가계비보다 적게 계산된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분석 결과가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圖表 17 경영양식별 평균 생활비

경영양식	전체 농가 호수	평균 가족수	戶當 평균생활비	일인당 생활비
지주	1	5.0	34.9	6.98
자작	4	6.0	107.59	17.93
자작겸소작	8	6.5	113.07	17.39
소작	9	6.1	65.35	10.69
기타	2	3.0	71.38	23.79
마을 전체	24	5.9	87.73	14.83

현금으로 지출된 上村의 생활비를 경영양식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圖表과 같다. 圖表에서 기타는 고농과 잡업에 종사하는 戶를 의미한다. 마을 전체의 戶當 평균 생활비는 87.7원 정도인데, 자작농과 자소작농 층은 각각 이보다 많은 107원, 113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戶當 생활비가 가장 적게 조사된 계층은 의외로 지주로서 액수가 마을 평균의 반도 미치지 못한다.

28) 滿鐵 産業部, 『鮮人農家經濟調査報告 -昭和九年度-, 제2편 (1937), 제8표 가계비 및 가계 지출 총괄표 참조, 여기서 말하는 가계지출은 가계비에다가 감가상각비를 합한 지출인데, 나머지 1%가 감가상각비로 집계되었다.

지주를 제외하면, 소작농과 고농 및 잡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생활비가 마을 전체의 평균 미만이다.

개인별 평균 생활비도 戶當 생활비의 추세를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마을 전체로 볼 때, 일인당 생활비는 14.8원 정도인데, 자작농과 자소작농 층이 17원대로서 많은 층에 속한다. 지주 농가의 일인당 생활비는 7원 정도로 戶當 평균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마을 평균의 반 밖에 되지 않는다. 소작농도 일인당 평균 생활비가 10원 정도로 마을 평균에 못 미친다. 반면에 특이한 것은 고농과 잡업에 종사하는 농가들(= 기타)은 23원대로 마을 평균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것인데, 기타에 속하는 농가가 戶當 생활비는 낮으나, 가족 수가 3명씩이므로 일인당 생활비가 이렇게 높게 계산된 것이다. 그러나 이 마을의 戶當 평균 가족수인 6명으로 기타 농가의 생활비를 나누어 본다면, 기타 농가의 일인당 생활비도 반으로 줄어들어 11원대가 되므로, 소작농가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 된다. 그러므로 경영양식별로 본 일인당 생활비도 실질적으로 戶當 생활비의 추세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농가 계층별로 살펴본 생활비 지출의 경향은 자작농과 자소작농 층이 戶當 생활비나 일인당 생활비가 다른 계층의 농민군보다 더 많으며, 소작농층은 이와 반대로 이 마을에서 戶當 또는 일인당 생활비가 가장 적은 농민군에 속한다고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上村의 생활비 항목별 지출 비율을 살펴보자. 비록 현금 지출 밖에 산정되지 않았다는 한계는 있어도, 이러한 항목별 구성 비율로서 上村 마을 조선 농가들의 생활수준을 대략적이거나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을 전체 농가의 1년간 생활비는 모두 2,105圓인데, 이것을 10개 항목(기타 항목 제외)으로 나누어 구성비율을 살펴 본 것이 圖表 18이다.

圖表 18 전체 농가 생활비 항목별 비율

항목	주거비	식료비	피복비	광열비	증기류	교육비
백분비율	3.0	51.6	22.2	5.2	0.9	4.3
항목	경조비	기호품비	오락비	의약비	기타	합계
백분비율	3.3	4.7	0.5	0.3	4.2	100.0

* 자 료: 調査表 14 (생활비 현금 지출표)

上村 농가에서 가장 많은 비율로 지출된 것이 식료비로서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피복비로서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의 지출 비율은 툭 떨어져서 5%대에 광열비, 4%대에 기호품비와 교육비, 3%대에 경조비와 주거비가 포함된다. 오락비와 의약비 지출은 모두 1% 미만이다.

이 지출항목을 편의상 기본 생활비와 문화생활비로 나누어 보려한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 즉 생존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건이 의식주임으로 주거비와 식료비, 피복비는 가장 핵심적인 기본 생활비가 된다. 또한, 만주와 같이 매섭게 추운 겨울을 보내야나 하는 지역에서는 광열비도 기본 생활비로 들어가야 할 것이고, 밥을 먹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증기류를 구입하는 비용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문화 생활비라는 개념은 기본적인 생활이 이루어진 다음 인간이 그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으로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비와 경조비, 기호품비, 오락비, 의약비를 포함한다.

이와같은 개념으로 구분해 보면, 上村 마을의 조선인 농가들은 기본 생활비로 82.8%, 문화 생활비로 13%, 기타 항목으로 4.2%를 지출한 것이 된다. 기본 생활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문화 생활비가 매우 낮으며, 문화 생활비 중에 특히 오락비와 의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합해도 생활비의 1%에

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上村 농가들이 하등의 불 만한 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지 못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 급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생활비의 항목별 구분을 경영양식별로 보았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圖表 19이다.

圖表 19 경영양식별 생활비 구성비율

경영양식	기 본 생 활 비					문화생활비	기타
	소개	주거비	식료비	피복비	광열비		
지주	37.2	2.3	20.6	13.9	0.4	11.6	51.2
자작	86.7	5.2	32.9	42.9	5.6	10.5	2.8
자소작	74.9	2.7	49.7	17.5	4.9	20.1	5.1
소작	89.3	2.1	62.7	18.2	6.3	10.0	0.7
기타	94.3	2.4	82.5	7.5	1.9	2.1	3.7
전체농가	82.8	3.0	51.6	22.2	5.2	13.0	4.2

* 자 료: 調査表 14 (생활비 현금 지출표)

경영양식별로 농가 계층을 구분하면, 기본 생활비는 고농과 잡업에 종사하는 기타 농가 계층의 생활비가 94.3%로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이 소작농, 자작농, 자소작농, 지주 순으로 낮아진다. 기타 농가와 소작농의 거의 90% 정도를 기본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은 생존 차원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기본생활비 비중만으로 농가 계층의 생활 수준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주가 40% 미만을 기본 생활비로 지출하는데, 이것은 지주가 생활정도가 높아 문화생활비로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드러난다. 지주는 調査表 상에는 나타나지 않은 어떤 연유로 인해서 기타 항목에 많

은 지출을 하고 있고, 문화생활비는 다른 계층의 비중과 비슷한 정도인 11% 정도만을 지출하고 있다. 문화생활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계층은 자소작농층이다. 이것은 6, 7, 8번의 자소작농가들이 교육비와 기호품비 등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고, 특히 7번 농가는 조사 농가들 중에는 유일하게 오락비에도 돈을 지출하고 있으며, 경조비로 52원의 거금을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자작농가의 문화생활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2번 농가를 제외하고는 교육비 지출이 미소하거나 없고, 다른 문화생활비 항목에도 평균수준 정도 밖에 지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생활비 지출 비용의 비중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上村의 농가군 중에 기본 생활비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도 하고, 소비 수준도 비교적 높게 생활하고 있는 부류는 자소작농층의 농가들인 것으로 보인다. 생활 수준을 살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전체 생활비 중에 식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엔겔 지수를 살펴보는 것이다. 엔겔지수는 기타 농가군이 가장 높은 82.5%를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지수가 높은 층이 소작농층으로서 62% 정도이다. 자소작농층이 자작농 층보다 17% 정도 더 높고, 가장 낮은 농가는 지주이다. 자가소비하는 곡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현금 지출만으로 계산된 식료비의 비중을 그대로 엔겔지수로 인정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 지주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잡업이나 고농, 소작농들의 경우 본고에서 가정한 기본생활비 비중도 높을 뿐만 아니라, 엔겔지수 역시 높다는 점에서 그들의 생활 수준이 다른 계층의 생활수준보다 낫다는 것은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6. 現金 收支

上村에 대한 경제실태 조사에서 농가의 경제상황을 가장 종합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자료로 제시된 것이 調査表 제 16현금수지표(수입부)와 제17 현금수지표(지출부)이다. 현금수지표 중 수입부는 크게 정상수입과 임시수입으로 나누어 집계되었다. 정상수입은 다시 농업적 수입과 기타 수입, 즉 농외 수입으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수입이 발생한 농업적 수입 항목은 농산물 매각비, 노임수입, 소가축 매각과 축산물 매각으로 구성되었고, 농업 수입 중 기타 수입 항목은 이자, 겸업수입, 외지에서서의 송금, 노임수입, 마차운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시 수입 항목중 실제로 수입이 발생한 항목은 건물매각, 대가축매각, 대농구매각, 투자금회수, 대부금회수, 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출부 또한 정상지출과 임시지출로 대별하여 집계하고 있다. 정상 지출은 다시 농업적 지출과 임시 지출로 구분하여 조사되었다. 농업적 지출 항목 중 실제로 지출을 한 항목은 소농구 구입, 농구 소수선, 소가축구입, 가축비, 종자수입, 비료구입, 사료구입, 노임지출, 조세공과, 소작료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 지출항목은 생활비와 이자지출 두 항목이다. 임시 지출 항목 중 실제로 지출한 항목을 열거하면, 토지 구입, 건물신축, 건물구입, 대농구구입, 대가축구입, 투자, 차입금변제, 증여, 기부, 출산비, 의료비, 장제비, 관혼비, 대부금 등이다.

그러나, 현금수지표라는 부기 방식은 농가의 현금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 내용을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의 경제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여러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미 가계비의 산출에서 현금 지출만을 산정할 경우 가계비가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현금 수지표의 약점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데 현금 수지 밖에 의존할 자료가 없을 때 갖게 되는 문제점들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항을 두

가지만 지적하려 한다. 첫째, 각종의 소득은 현금만이 아니라 비현금 즉 현물도 금액으로 환산하여 포함되어야 하는데, 調査表는 이것을 집계하지 않고 있으므로 농가의 실제적 소득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예컨대, 소작농가의 농업적 소득을 정확하게 알려면, 우선 농업적 수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작물 수입이 매각액만이 아니라, 자가 소모액과 작물 연탈 증가분도 모두 계산되어야 하는데, 調査表 상에는 매각액만이 수입으로 잡히고 있다. 또한 농업적 지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작료가 금납의 경우는 물론 물납의 경우도 금액으로 환산되어 지출로 계산되어야 하는데, 調査表의 소작료 지출 항목에는 금납으로 현금이 지출된 3건만 집계되어 있다. 이것은 사실상 현금수지표를 통하여 농가의 농업 소득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둘째, 차입금과 대부금이 모두 현금의 입출입과 관련되므로, 현금수지표상에 차입금은 임시 수입으로 대부금은 임시지출로 계산되어 있다. 농가 경제 전체로 보면, 차입금은 부채로서 대부금은 자산으로서 계산되어야 하는데, 이 점이 오히려 거꾸로 계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금수지표라는 부기 방식이 갖는 또 하나의 구조적인 약점인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현금수지표 외에 달리 농가의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조사 내용이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농가의 경제상황을, 부분적일수 밖에 없지만, 농가의 현금 입출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려 한다.

가. 現金 收入

圖表 20 경영양식별 현금수입 구성비율

	전체농가	지주	자작농	자소작농	소작농	기타농
수입총계(원)	5323.03	117.00	1318.00	2498.13	1243.30	133.80
경상수입(%)	57	57	70	47	60	99
임시수입(%)	43	43	30	53	40	1
戶當수입(원)	220.97	117.00	329.50	312.30	138.14	66.90

* 자 료: 調査表 16 (현금수지표: 수입지부)

圖表20은 현금 수입 관계를 경영양식별로 나누어 정리해 본 것이다. 上村 전체 농가 24호가 연간 현금으로 들어온 돈은 戶當 평균 약 221원, 그 중 경상 수입의 비중은 57%, 임시 수입의 비중은 43% 를 차지하고 있다. 경상 수입은 농가의 주업과 부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느 정도 고정적인 수입이며, 임시 수입은 농가의 직업적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자산의 일부를 매각하거나, 차입을 함으로써 생기는 수입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경상수입의 비중이 높아야 농가의 연간 수입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임시 수입의 비중이 현금 수입의 43%를 차지한다는 것은 마을 농가들의 경제 상태가 그다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경영양식별로 戶當 평균 수입액을 살펴보면, 자작농과 자소작농의 수입이 모두 300원대 이상이다. 소작농이 138원, 지주가 117원의 현금 수입을 얻고 있으며, 고농이나 잡업 농가인 기타 농가는 66원대로서 가장 낮은 현금 수입을 기록하고 있다. 경상수입의 비중이 가장 높은 농가군은 기타농으로서 현금 수입의 거의 전부인 99%가 경상수입이다. 수입원이 안정적이라는 해석은 가능하나, 戶當 현금 수입이 가장 낮은 계층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 이 경우는 오히려 내다 팔 자

산(대가축이나 대농구 등)도 없고, 부채를 질만한 신용도 없는 경제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같이 경상수입의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에 수입이 가장 높은 농가 계층인 자작농이 70%의 경상수입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자작농의 수입원이 안정적이라는 해석이 의미를 가진다. 지주와 소작농은 경상수입의 비중이 대략 60% 정도인데, 이들도 현금 수입의 많은 부분을 고정적인 수입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들 중에는 농사 부진(파종 면적의 41%가 수확량 전무함²⁹⁾)으로 인하여 농업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소작농인 19번 농가와 같이 임시 수입에 100% 의존한 경우도 있다. 자소작농은 경상수입의 비중이 47%로 어느 농가 계층보다 낮다. 수입원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이다.³⁰⁾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이 계층이 가장 역동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도 해석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은 만약 그들이 자산을 팔거나 부채를 얻어서 임시수입을 늘린 것이 농업생산재를 구입하는데 쓰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들 중 일부, 특히 7번 농가의 경우에는 이러한 해석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하여 경상수입과 임시수입을 주요 수입원으로 나누어 圖表化하면 다음 페이지의 圖表 21과 같이 된다. 경상수입에 대한 농업적 수입의 비율은 전체 농가의 경우 79%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적 수입은 농산물 매각이 95%로서 압도적인 수입원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노임 수입이 3% 정도 있는데, 이것은 소작겸농 (소작농으로 분류)

29) 調査表 제12 작물별 파종면적 및 수량표 참조

30) 실제 12번과 13번 농가는 경상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농업 소득이 격감하였기 때문이다. 12번 농가의 경우 전혀 수확량이 없는 경지가 파종면적의 25%, 13번 농가는 63%에 달하였다. (調査表 제12 작물별 파종면적 및 수량표). 13번 농가는 수해로 인하여 수확량이 없으므로 소작료도 감면 받은 실정이다. (調査表 제 10 소작관계표). 따라서 이들 두 농가는 경상수입의 주요한 요소인 농산물 매각도 하지 못하였다. (調査表 제 13 농산물 매각표)

1호와 고농(기타농으로 분류) 1호의 노임수입이다. 경영양식별로 분류해보면, 기타 농가의 경우 노임수입이 농업적 수입의 100%를 차지하고 있을 뿐, 다른 계층의 주요 농업적 수입원은 농산물 매각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圖表 21 경영양식별 경상수입표

구 분	전체농가	지주	자작농	자소작농	소작농	기타농
경상수입합계 (원)	3030.53	67	917.5	1170.13	743	132.9
농업수입합계 (원)	2407.33	52	868.3	928.63	518	40.4
농업/경상 (%)	79	78	95	79	70	30
농산물/농업(%)	95	100	99	98	91	0
노임/농업(%)	3	0	0	0	4	100
농외수입합계 (원)	623.2	15	49.2	241.5	225	92.5
농외/경상(%)	21	22	5	21	30	70
기타업/농외(%)	76	100	0	73	89	92
마차운반/농외 (%)	20	0	85	27	7	0

* 자 료: 調査表 16 (현금수지표 : 수입지부)

경상수입에 대한 농외수입의 비율은 마을 전체로 보아 21%인데, 그 중 기타업(정기적 부업)에 종사하여 얻은 현금 수입이 76%로서 농외 수입의 주요 원천이 정기적으로 종사하는부업임을 명시하여 주고 있다. 또 마차 운반업(부정기적 부업)이 농외수입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농가의 현금 수입에 마차 운반을 통한 수입이 또 다른 수입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경영양식별로 보면, 자작농은 기타업 종사자는 아무도 없고 마차 운반을 통해 약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마차 운반업은 자소작농 층의 농외 수입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소작농 층의 주요 농외수입원은 기타업으로서, 이렇

계 비중이 높아진 것은 6번 농가가 정미업을 겸업하면서 150원의 현금수입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작농층도 기타업 의존도가 높는데, 14번 소작농가에 광산 노동에 종사하며 2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지주의 경우 모든 농외 수입이 기타업인데, 그의 기타업은 목공업이다. 기타농가의 경우는 고농인 23번 농가가 35원, 사금채굴에 종사하는 24번 잡업 종사 농가가 50원의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농외 수입의 92%를 기타업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영양식별로 본 농외수입의 구성상 특징을 요약하면, 본격적인 농가가 아닌 기타농가와 지주를 제외할 경우, 자소작농과 소작농은 모두 경상수입의 20 내지 30 % 정도를 농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농외수입의 주요원천은 정미업, 광산업 등 정기적인 부업에 종사하거나, 마차운반 등 부정기적인 부업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 이 두 농가계층의 특징이 전체 마을 농외수입 구성의 특징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서 전체농가의 수입총계에서 임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46%로서 대단히 높다는 점을 이미 지적하였다. 이렇게 임시수입 비중이 높은 이유를 圖表 22에서 찾아보자. 圖表에서는 100원 이상의 임시 수입 항목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100원 미만인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은 대농구매각(20원), 출자금 회수(75원), 대부금 회수(80.6원), 피중여(71원) 등이다. 圖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농가의 임시 수입 중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6%로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대가축 매각과 건물 매각이 순으로 낮아진다. 여기에서 임시수입 비중이 높은 것은 바로 이 차입금이 많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임시수입 중에 포함된 차입금 즉 부채는 1052.7원로서 임시 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체 현금 수입 면에서 보아도 약 20%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액수이다.

圖表 22 경영양식별 임시수입표

구 분	전체농가	지주	자작농	자소작농	소작농	기타농
임시수입합계 (원)	3030.53	67	917.5	1170.13	743	132.9
임시/수입총계(%)	43	43	30	53	40	1
건물매각/임시 (%)	15	0	0	23	6	0
대가축매각/임시(%)	25	0	34	23	27	0
차입금/임시 (%)	46	100	51	40	55	0

* 자 료: 調査表 16 (현금수지표: 수입지부)

임시수입 구성을 경영양식별로 보면, 지주는 전액이 차입금이고, 기타 농가는 건물 매각이나 대가축매각, 차입금 등이 하나도 없다. 경상수입에 비하여 임시 수입이 더 많은 자소작농의 경우, 차입금도 40%로 많지만, 건물 매각이나 대가축 매각으로 들어 온 현금 수입도 각각 23%씩을 차지하여 중요한 임시 수입원이 되고 있다. 마을 농가 중 기타 농가를 제외하고는 경상 수입 비중(70%)이 가장 높고, 임시 수입 비중(30%)이 가장 낮은 자작농의 경우, 가장 주요한 임시 수입원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차입금과, 34%를 차지하는 대가축 매각으로 되어 있다. 소작농은 약간의 건물 매각이 임시 수입원이 되고 있으나 주로 대가축 매각과 차입금이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 특히 차입금 의존도가 55%로서 지주를 제외하면 농가계층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차입금은 생활비에 보태 쓰기 위한 소비용이 있는 반면에, 토지 구입 등 생산재 구입에 투자하기 위한 투자용도 있을 수 있다. 소비용은 자급자족할 수 없는 농가의 경제상을 반영하나, 투자용 차입은 농가의 경제 규모 확대를 노리는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반영한다. 차입 용도를 보면, 우선 지주는 생활비와 채무부채를 위한 것이니 소비용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자작농은 2호가 부채를 갖고 있는데, 2번 농가는 생활비로서 소비용 차입을 하였고,

5번 농가는 토지 구입을 위하여 돈을 빌렸으니 투자용 차입이 된다. 자소작 농층은 5호가 차입을 하고 있는데, 생활비 즉 소비용 차입은 11번 농가 뿐 이고 나머지 차입 자소작농들 (8, 9, 12, 13번 농가)은 토지나 소 등의 생산 재를 구입하거나 미곡상을 하기 위한 차입으로서 투자용 차입이다. 6호의 소작농가들이 차입하고 있는데, 거의가 소비용 차입이다. 14번 농가는 혼례 비로서 차입하고, 15번 농가는 연료 구입과 생활비로, 20번 농가는 일부는 주거구입을 위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나머지 차입 소작농가(16, 17, 18번 농가)들은 모두 생활비로 차입하고 있다.³¹⁾

이와 같이 경영양식별로 차입 용도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자소작층 은 투자용 차입이 많고, 자작농은 투자용과 소비용이 반반이며, 지주나 소 작농은 거의 대부분이 소비용 차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볼 때, 가장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계층은 자소작농 층이고, 가장 궁핍 한 생활을 하고 있는 층은 지주나 소작농층이며, 자작농층이 양자의 중간적 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된다.

나. 現金 支出

圖表 23 경영양식별 현금지출표

구 분	전체농가	지주	자작농	자소작농	소작농	기타농
지출총계(원)	6794.93	118.67	1253.54	4073.34	1206.08	142.75
戶當지출(원)	283.12	118.67	313.39	509.17	134.01	71.38
경상지출/지출총계(%)		농업/경상	농외/경상	생활비/농외	임시지출/지출총계 (%)	
	41	24	76	98	59	

* 자 료: 調査表 16 (현금수지표: 지출지부)

31) 調査表 제15 대차관계표 (其1, 其2)

圖表 23에서 보듯이 上村 전체 농가 24호의 현금 지출 총계는 6795원, 戶當 평균 지출액은 283원이다. 戶當 지출액이 마을 평균을 넘는 계층은 자작농과 소작농층인데, 자소작농이 戶當 지출액이 509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자작농으로 313원이다. 나머지 농가 계층들의 戶當 지출액은 모두 평균치 이하인데, 소작농이 134원, 지주가 119원이고, 기타농은 71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상지출액은 전체 지출액의 41%, 임시지출액이 59%로서 마을 농가들의 현금 지출은 임시 지출비로 많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상 지출은 다시 농업적 지출 24%, 농외 지출 76%의 비중으로 구분된다. 농업적 지출의 비율이 적다는 것에서 이 마을 농가들의 농업 관련 경제 활동이 적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調査表에서 농업적 지출 비용이 적은 것은 부기 방식이나 집계 방식에서 나온 문제이지, 조사마을의 실질적 농업활동의 비중이 낮기 때문이 아니다.³²⁾ 농외지출이 경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주요한 이유는 생활비 때문이다. 생활비는 농외지출의 98%로서 사실상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생활비가 경상수입의

32) 부기 방식과 관련된 문제점은 調査表가 현금지출표이기 때문에 현물 소작료가 계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사마을 소작지의 경우 소작료는 수확량의 절반인데, 대부분이 현물소작료이기 때문에, 현금지출장부에는 기록될 수가 없는 것이다. 소작료 항목에는 금납 계약이 된 소작지를 경영한 자소작농가 3호의 현금 소작료(도합 93원)만이 기록되었을 뿐이다. 만약 현물소작료가 모두 금액으로 환산되어 소작료 항목에 포함되었다면, 농업적 지출액의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졌을 것이다. 집계방식에 따른 문제점은 지출 항목이 경상 지출과 임시 지출로 구분되어 - 즉 지출이 매년 고정적으로 발생하느냐, 아니면 예외적으로 발생하였느냐에 초점이 모아졌기 때문에 - 실제적으로는 농업적 지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지출항목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임시 지출의 항목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토지 구입비와 대가축 구입비(도합 2039원)로 지출되고 있다. 토지나 대가축 등은 농업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비용임에 틀림이 없으나, 집계 방식상 임시지출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만일 토지와 대가축 구입비를 調査表상의 농업적 지출액인 662원에 첨가 시킨다면, 농업지출이 2671원이 되어 전체 지출액의 거의 40%에 해당한다. 현물 소작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럴진데, 만일 모든 소작료가 금액으로 환산되어 계상되었다면, 농업적 지출이 전체 지출액의 50%를 쉽게 넘어설 것이다.

75%에 해당하기 때문에 농외지출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다음은 경상 지출과 임시 지출을 주요 항목 별로 구분하여 그 대체적인 경향을 살펴보자. 圖表 24는 경상 지출비의 항목별 경향을 분석해보기 위하여 작성되었는데, 경영양식 별로 경상 지출 항목을 정리하였다.

경상지출은 전체농가의 경우 戶當 평균 117원인데, 자작농과 자소작농 계층은 150원에서 160원대로서 60원대에서 70원대인 나머지 농가 계층 평균 지출액의 2배 이상을 경상비로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상지출에 대한 농업 지출의 비중은 마을 평균이 24%인데, 이를 경영양식별로 보면 지주가 42%로 가장 높고, 자소작농, 자작농, 소작농 순으로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기타농가는 농업 지출이 전무하므로 비중도 0%이다. 그러나 농업 지출비의 절대액은 전체 농가가 戶當 평균 27.6원, 자작농과 자소작농이 모두 40원대, 지주가 그 반인 20원대, 소작농은 8원대로서 자작, 자소작농 층의 1/5 내지 1/6로서 매우 적은 비용을 戶當 농업비로 지출하고 있다. 경상 지출에 대한 농외 지출의 비중은 마을 전체의 경우 76%에 해당하여, 농업적 지출 비중 24% 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기타농가는 모든 경상지출비가 농외 지출로서 농외지출 비중이 100%이고, 소작농도 79%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자작농과 자소작농은 70%대, 지주는 58%가 농외 지출 비중이다. 농외지출비도 戶當 절대액의 순서는 비중의 순서와 거의 거꾸로다. 자소작농과 자작농이 모두 100원대 이상으로서 가장 높은 층에 속하고, 기타 농가가 71원, 소작농이 69원이며, 지주가 가장 낮아 40원 정도이다.

圖表 24 경영양식별 경상지출표

구 분	전체농가	지주	자작농	자소작농	소작농	기타농
경상지출합계 (원)	2812.27	68.67	603.00	1305.31	692.54	142.75
戶當경상지출(원)	117.18	68.67	150.75	163.16	76.95	71.38
농업지출합계 (원)	662.42	28.77	166.24	394.04	73.37	0
戶當농업지출(원)	27.6	28.77	41.56	49.26	8.15	0
농업지출/경상 (%)	24	42	28	30	11	0
소가축구입/농업(%)	13	35	20	9	12	0
노임/농업 (%)	9	0	4	14	0	0
판매비/농업(%)	6	3	6	5	10	0
조세공과/농업(%)	47	62	64	37	35	0
소작료/농업(%)	14	0	0	24	0	0
농외지출합계 (원)	2149.85	39.9	436.76	911.27	619.17	142.75
戶當농외지출(원)	89.58	39.9	109.19	113.91	68.8	71.38
농외/경상(%)	76	58	72	70	89	100
생활비/농외(%)	98	87	99	99	96	100

* 자 료: 調査表 16 (현금 수지표: 지출지부)

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농업지출이나 농외 지출의 경상지출에 대한 비중은 마을 전체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의미가 있으나, 경영양식별로 그 비중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경영양식별 비교는 오히려 절대액의 비교가 의미가 있다. 그런점에서 戶當 경상지출이나, 戶當 농업지출 또는 戶當 농외 지출을 절대액으로 볼 때는 어느 경우에도 자작농과 자소작농층이 다른 계층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두 계층 중에서는 자소작농층이 자작농층보다 약간 지출액이 더 많다. 이것이 비록 현금 만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이들 농가 계층이 다른 농가 계층보다 더 많은 현금 지출을 할 여력이 있다는 점으로 해석된다. 소작농은 경상지출이 이들에 비하여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되고, 특히 농업적 지출은 자소

작농층의 1/6, 자작농층의 1/5에 해당한다. 소작농의 농업 지출이 이처럼 적은 것은 물론 그들의 소작료가 모두 현물 소작료로서 현금 수지표상에는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점에서는 지출을 많이 할 수 없는 궁핍한 경제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경상지출이 적은 것이 낮은 경제 수준을 반영하는 점은 70원 전후를 지출하고 있는 지주나 기타 농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다음은 농업 지출 항목들의 특징을 살펴보자. 농업지출 항목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조세공과이다. 마을 전체의 조세공과액은 309.56원으로서 농업지출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4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크다. 농가 계층으로는 지주와 자작농의 조세공과 비중이 각각 62%와 64%로서 자소작농의 37%, 소작농의 35%에 비하여 거의 배가 된다. 그리고 戶當 평균 조세공과액은 지주가 17.97원, 자작농이 26.53원, 자소작농이 18.16원, 소작농이 4.47원으로서 자작농가가 가장 많은 조세공과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에 특징적인 것은 소작료인데, 자소작농만이 농업지출의 24%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수차 언급한데로, 자소작농 3호만이 上村 마을에서 금납정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자소작농 5호와 소작농 9호의 소작료는 현물 소작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되지 않았다.

농외지출로서 실제 발생한 항목은 생활비와 이자뿐인데, 마을 전체로 볼 때 농외 지출의 98%가 생활비, 2%가 이자로 지불로 인한 현금 지출이다. 차입금 이자 지불의 비중이 가장 많은 농가는 지주로서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자 지출 비중이 가장 낮은 계층은 기타 농가층으로서 0%이다. 농외지출을 절대액으로 보면, 자소작농이 가장 많은 114원이고, 다음이 자작농으로 109원, 기타농과 소작농이 각각 71원과 69원, 지주가 40원정도로 지출이 적게 되고 있다. 조사 마을의 농외 지출은 거의 생활비 즉 가계비와

동일하므로, 농가계층별 戶當 농외지출액은 사실상 가계비 지출액과 정비례하고 있다. (圖表 19 경영양식별 생활비 구성 비율 참조)

앞서 언급한대로 마을 전체의 임시지출합계액은 전체 지출 총액의 59%에 해당하는 3982.66원인데, 여기에는 농업 자산을 증식시키는 토지구입, 대가추구입비도 들어있고, 농업외의 경제활동에 해당하는 차임금반제 또는 대부 등도 포함되어 있다. 임시지출액을 戶當 평균액으로 보면, 마을전체가 165.9원인데 이 평균액을 넘은 농가군은 자소작농뿐이다. 평균에 근접한 층도 162.6원을 지출한 자작농 층일뿐, 나머지 농가계층의 戶當 임시지출비는 딱 떨어진다. 지주가 50원, 소작농이 57.1원이고 기타농가는 임시지출액이 한푼도 없다. 왜 이렇게 자소작농층의 임시 지출비가 많은가를 분석하여 보면, 임시 지출비의 규모와 농가의 경제 활동의 규모가 상당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圖表 25 경영양식별 임시지출표

구 분	전체농가	지주	자작농	자소작농	소작농	기타농
임시지출합계(원)	3982.66	50	650.54	2768.58	513.54	0
戶當임시지출(원)	165.94	50	162.64	346.07	57.06	0
임시/지출총계(%)	59	42	52	68	43	0
戶當토지구입비(원)	66.79	0.0	75.0	162.88	0.0	0.0
토지구입/임시(%)	40	0	46	47	0	0
戶當대가추구입(원)	18.17	0.0	32.0	29.75	7.78	0.0
대가추구입/임시(%)	11	0	20	9	14	0
戶當부채반제액(원)	21.07	50.0	25.0	13.06	27.91	0.0
부채반제/임시(%)	13	100	15	4	49	0
戶當 관혼비(원)	13.54	0.0	0.0	37.5	2.78	0
관혼비/임시(%)	8	0	0	11	5	0
戶當 대부금(원)	18.65	0.0	27.63	35.63	5.78	0.0
대부/임시(%)	11	0	17	10	10	0

* 자 료: 調查表 16 (현금 수지표: 지출지부)

圖表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소작농층은 토지구입에 戶當 162.9원, 대가축구입에 戶當 29.8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 두항목은 모두 농업 생산재 구입인데, 여기에 임시 지출비의 56%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소작농층이 上村 농가군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농업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이런 항목으로 임시지출비의 전체 규모가 커졌다는 것은 임시지출비가 농가군의 경제 규모를 잘 반영하는 증거라고 하겠다. 한편, 자소작농층은 戶當 대부금도 35.6원으로서 대부를 하고 있는 농가계층 중 가장 많은 액수에 해당한다. 자소작농층은 경제 규모가 큰 농가계층일뿐만이 아니라, 가장 많은 액수를 대부할만큼 경제여력도 있는 농가군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여력은 관혼비의 규모에도 나타난다. 조사 마을에서 혼례를 치른 가정은 자소작농 2호와 소작농 1호가 있는데, 자소작농의 경우 평균 150원을 지출한데 반하여, 소작농은 25원의 관혼비만을 지출하고 있다. 관혼비가 해당 가정의 경제력에 비례한다고 보았을 때, 자소작 농가의 경제력이 소작농의 경제력보다 낫다는 것은 이런 점에도 반영되고 있다 하겠다.

자소작농의 예와같이 임시지출비가 경제규모를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라고 본다면, 上村 농가의 경제 규모는 자소작농이 가장 크고 자작농이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그 다음은 소작농, 지주, 기타 농가 순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농가 계층의 평균을 가지고 추정된 것으로서, 계층 내의 개별 농가에 따른 차이는 무시된 것이다.

다. 現金 收支 綜合

현금수지표를 가지고 농가의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알기는 곤란하지만, 들어오고 나가는 현금의 규모로서 농가의 경제 활동의 경향은 추정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현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액으로서 계산되는 현금 수지 상황도 어느정도 농가의 경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전 농가의 현금 수지상황을 총괄적으로 살펴 보려고 작성한 것이 圖表 26이다.

농가 경제 활동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농가의 경제 규모를 살펴보자. 본고에서는 농가의 경제규모를 그 농가가 연간 취급한 현금의 총계로 가정하고, 경제 규모가 큰 농가들이 경제 활동도 활발한 것으로 보았다. 圖表상에 설정된 수지총계 항목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농가의 경제 규모로써,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의 총합으로 계산된 것이다. 圖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戶當 연간 경제규모는 마을 전체가 평균 504원이다. 경제규모가 가장 큰 농가 계층은 자소작농 계층으로써 821원의 현금을 취급하고 있고, 자작농 계층이 戶當 643원으로써 자소작농 다음의 경제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나머지 농가계층들은 戶當 평균 경제 규모가 자소작농 그룹의 1/4 내지 1/6 밖에 되지 않는데, 소작농 계층이 272원, 지주가 236원, 마지막으로 기타 농가가 138원이다. 현물 거래를 정확하게 추산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현금 거래액만으로 농가의 경제 규모를 살핀다는 것이 문제점은 있으나, 현물의 거래량도 현금 거래에 대체로 비례한다고 본다면, 현금 거래량은 최소한 농가 경제 규모의 대체적인 경향은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조사 마을 농가들 중 경제 규모가 크고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계층은 자소작농 층인데, 자작농 층이 약간 뒤쳐지면서 자소작농층과 아울러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소작농과 지주가 그 다음 그룹이 되며, 기타농가 계층이 가장 후미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圖表 26 현금수지 종합 도표 삽입

농가번호	경영양식	수입합계	지출합계	수지총계	명목수지차액	차입금	대부금	대부-차입	실질수지차액	투자(생산제 등)	투자/지출(%)
1	지주	117.00	118.67	235.67	-1.67	50.00	0.00	-50.00	-51.67	0.00	0%
	합계	117.00	118.67	235.67	-1.67	50.00	0.00	-50.00	-51.67	0.00	0%
지주	호당평균	117.00	118.67	235.67	-1.67	50.00	0.00	-50.00	-51.67	0.00	0%
2	자작농	637.70	645.30	1283.00	-7.60	100.00	86.50	-13.50	-21.10	227.00	35%
3	자작농	208.00	163.69	371.69	44.31	0.00	0.00	0.00	44.31	66.00	40%
4	자작농	146.00	144.19	290.19	1.81	0.00	0.00	0.00	1.81	0.00	0%
5	자작농	326.30	300.36	626.66	25.94	100.00	24.00	-76.00	-50.06	135.00	45%
	합계	1318.00	1253.54	2571.54	64.46	200.00	110.50	-89.50	-25.04	428.00	34%
자작농	호당평균	329.50	313.39	642.89	16.12	50.00	27.63	-22.38	-6.26	107.00	34%
6	자소작농	246.00	619.51	865.51	-373.51	0.00	160.00	160.00	-213.51	0.00	0%
7	자소작농	1030.00	1689.64	2719.64	-659.64	0.00	80.00	80.00	-579.64	1068.00	63%
8	자소작농	457.50	617.22	1074.72	-159.72	100.00	0.00	-100.00	-259.72	170.00	28%
9	자소작농	248.00	131.45	379.45	116.55	110.00	0.00	-110.00	6.55	65.00	49%
10	자소작농	91.80	400.36	492.16	-308.56	0.00	45.00	45.00	-263.56	150.00	37%
11	자소작농	123.83	148.50	272.33	-24.67	90.00	0.00	-90.00	-114.67	0.00	0%
12	자소작농	29.00	196.12	225.12	-167.12	4.50	0.00	-4.50	-171.62	138.00	70%
13	자소작농	272.00	270.54	542.54	1.46	222.00	0.00	-222.00	-220.54	150.00	55%
	합계	2498.13	4073.34	6571.47	-1575.21	526.50	285.00	-241.50	-1816.71	1741.00	43%
자소작농	호당평균	312.27	509.17	821.43	-196.90	65.81	35.63	-30.19	-227.09	217.63	43%
14	소작농	311.40	306.65	618.05	4.75	50.00	0.00	-50.00	-45.25	0.00	0%
15	소작농	421.10	281.40	702.50	139.70	85.00	52.00	-33.00	106.70	0.00	0%
16	소작농	42.50	77.98	120.48	-35.48	15.00	0.00	-15.00	-50.48	0.00	0%
17	소작농	131.10	156.98	288.08	-25.88	34.10	0.00	-34.10	-59.98	0.00	0%
18	소작농	12.60	23.42	36.02	-10.82	0.00	0.00	0.00	-10.82	0.00	0%
19	소작농	120.00	116.47	236.47	3.53	20.00	0.00	-20.00	-16.47	0.00	0%
20	소작농	131.60	111.77	243.37	19.83	72.10	0.00	-72.10	-52.27	0.00	0%
21	소작농	10.00	80.45	90.45	-70.45	0.00	0.00	0.00	-70.45	0.00	0%
22	소작농	63.00	50.96	113.96	12.04	0.00	0.00	0.00	12.04	0.00	0%
	합계	1243.30	1206.08	2449.38	37.22	276.20	52.00	-224.20	-186.98	0.00	0%
소작농	호당평균	138.14	134.01	272.15	4.14	30.69	5.78	-24.91	-20.78	0.00	0%
23	고농	83.80	86.72	170.52	-2.92	0.00	0.00	0.00	-2.92	0.00	0%
24	잡업	50.00	56.03	106.03	-6.03	0.00	0.00	0.00	-6.03	0.00	0%
	합계	133.80	142.75	276.55	-8.95	0.00	0.00	0.00	-8.95	0.00	0%
기타농	호당평균	66.90	71.38	138.28	-4.48	0.00	0.00	0.00	-4.48	0.00	0%
전체합계	호당평균	5303.23	6794.93	12104.61	-1491.70	2301.90	964.03	-1337.87	-2829.57	1969.00	29%
전체농가	호당평균	220.97	283.12	504.36	-62.15	95.91	40.17	-55.74	-117.90	82.04	29%

경제 규모가 크다는 것이 곧 수지 차액에서 잉여를 보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圖表에서는 현금 수지 차액을 명목수지 차액과 실질수지차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명목수지 차액은 수입합계에서 지출합계를 기계적으로 뺀 액수이다. 이러한 명목수지차액으로 보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계층은 자작농(16원)과 소작농(4원)이다. 그런데 현금 수입 합계에는 차입금, 현금 지출 합계에는 대부금이 포함되어 있다. 차입금은 현금 수입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농가의 부채이며, 반대로 대부금은 현금 지출로 취급되지만 사실은 농가의 자산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농가 경제 활동의 결과를 손익 계산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때는 둘 다 빠지고 이자 수입과 지출만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개략적인 경향만을 계산하기 위하여 이자의 수지는 계산하지 않고, 차입금과 대부금을 뺀 것만으로 실질 수지 차액을 산정하여 보았다. 계산 방식은 실질수지차액 = (수입합계-차입금) - (지출합계-대부금) = (수입합계-지출합계) + (대부금-차입금) = 명목수지차액 + (대부금-차입금)이다.

조사마을 농가 전체로 볼 때는 차입금이 戶當 평균 96원이고, 대부금이 40원으로서 대차수지는 戶當 -56원이다. 이것을 명목수지차액에다 합하면, 조사 마을인 上村 농가의 戶當 평균 실질수지차액은 -118원이다. 경제활동의 결과가 戶當 118원만큼의 적자를 보았다는 말이 된다. 실질수지차액을 농가 계층별로 보았을 때는, 자소작농 층이 -227원으로 적자 폭이 가장 많고, 지주(-52원), 소작농(-21원), 자작농(-6원), 기타농가(-4원) 순서로 적자 폭이 감소한다. 그렇다면 외양적인 경제 규모가 가장 컸던 자소작농층이 경제 활동의 결과는 가장 손해를 보았다는 말인가? 기타 농가가 가장 전실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아 이해가 잘 안되며, 어딘가 이상하다.

실질 수지 차액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 점은 농가들의 지출 항목 내용을 살펴볼 때 의문이 풀린다. 지출 항목 중 토지 구입비와 대가축 구입비 등의 생산재 구입에 필요한 비용 지출과 사업에 출자한 금액은 사실상 투자액이며, 투자액이 많다는 것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것으로서 비록 수지 차액에서는 일시적으로는 적자를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인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실질수지차액은 투자액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圖表상의 투자 항목은 토지 구입비와 대가축 구입비 등 생산재 구입비와 출자금(7번 농가의 경우로써 200원)을 합한 것이다. 투자는 전적으로 자작농과 자소작농 계층에서만 이루어졌다. 자작농의 경우 4호중 3호가 출자하였는데, 총액은 지출액의 34%에 해당한다. 자소작농의 경우는 8호중 6호가 출자하고 있으며, 투자액의 비중은 지출액의 43%에 이른다. 그래서 투자액을 고려한다면 실질수지차액의 의미가 완전히 달리 해석된다. 예컨대, 자소작농들이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지출액이 그만큼 감소되므로, 수지차액은 -227원이 아니라 -1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적자폭이 10원이라는 것은 소작농보다도 적고, 지주보다도 적은 폭이 되는 셈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자작농 층이 투자를 않을 경우 101원 정도의 흑자를 보게 되어 가장 건실한 경제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기타농가의 경우는 비록 적자 폭이 4원대로 적기는 하지만, 차입도 대부도 할 수 없는 최소의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농가군임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농가군들과 대등하게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투자, 대차 등을 고려하면서 실질 수지차액을 읽는다면, 농가의 경제활동의 건실성도 자작농, 자소작농이 선두 그룹에 속한다. 이 경우 경제 규모와 달리 자작농이 자소작농보다 더 건실도가 높는데, 이것은 자소작농이 그만큼 활발하지만

모험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보아진다. 다음 그룹이 소작 농과 지주이고, 기타 농가는 가장 하위 그룹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7. 맺음말

지금까지 滿洲國 실업부 임시조사국이 1935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촌 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제가 중국 동북 지방을 강점한 후 세운 괴뢰 「滿洲國」 당시의 간도성 延吉縣 陽城村 B단에 살고 있던 조선 농민들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여 보았다. 부분적으로는, 특히 농가소득이나 가계비와 관련된 사항 등에서, 현물의 증감에 관한 자료가 집계되지 않아 엄밀한 의미에서는 농가 경제 구조의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농가 경제의 대체적인 경향은 알 수 있었다고 본다. 본고에서 上村 마을의 특징으로 분석되었던 몇 가지 점들을 요약하면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조사 마을은 주로 함경북도 城津 출신들로 이루어진 조선인 同鄕村으로써, 마을 전체 의 농가수는 24호이었는데, 그 중 3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작농가로서 자작농 4호, 자소작농 8호, 소작농 9호(소작겸고농 1호 포함)로 구성되었다. 마을의 지리적인 위치는 해란강 유역의 두도구 평야의 일부를 이루는 지역에 자리잡아 수전 경작에 유리하였다. 따라서 전 耕作地의 70%에 해당하는 면적에 논농사를 짓고 있던 마을이었다.

그러나 戶當 평균 耕作地는 3.08향(2.2町)으로써 간도 조선농들의 평균 耕作地(4.86향)보다 적어 영세경영으로 특징지워진다. 농가 계층별로 보았을 때, 2.4향정도 밖에 경작하지 못하는 소작농의 경우, 영세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소유 토지로 보면, 토지 소유 농가의 戶當 평균 토지는 2.86향으로

서 간도 조선 농민들의 특징인 과소농적 토지 소유 상태가 이 마을도 예외가 아니었다. 마을의 소작지는 90% 이상이 외부 지주의 소유지를 차입한 것으로서, <촌외지주의 조선인 소작농에 대한 강력한 지배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촌외 지주는 조선인, 동척(일본인), 중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주소작 간의 대립이 민족간의 대립과 겹쳐진 이중적인 대립 구조하에 처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촌외 지주 중 중국인 지주의 토지 대부분 비중이 다른 민족 지주보다 더 많아, 上村이 비록 외부적으로는 조선농가들로만 이루어진 마을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 부분 중국인 지주 - 조선인 소작농의 구조를 띠고 있었다. 소작료는 대부분이 수확량의 절반을 현물로 납부하는 분의 소작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극히 일부만이 금납정조의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주요 파종 곡물은 水稻로써 전 곡물의 69%를 차지하고 있고 향당 수확량은 24석이였다. 발작물로써 특이한 것은 아편재배가 많다는 것인데, 특히 자소작농층에서 아편재배를 많이하고 있었다. 아편의 향당 생산량은 간도의 평균치보다 2배 가까운 향당 110兩 정도였다. 이 두 작물은 또한 주요 매각 대상 작물이기도 하였다. 매각량을 보면, 아편은 전량 판매 되었으므로 100%의 商品化率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水稻의 경우는 商品化率을 추정하여 보았을 때 약 20% 정도에 그쳤다. 이런 점에서 볼 때, 上村의 경우 조선 농가들에 대한 상품경제의 침투는 水稻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아편재배와 판매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본다.

농가의 평균 생활비는 戶當 87.7원으로 집계되었다. 현물이 포함되지 않고 순전히 현금이 지출된 것만 계산하였기 때문에, 실제의 생활비는 이보다 약 25% 정도가 더 지출되었다고 추정된다. 농가 계층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자작농과 자소작농의 생활비가 소작농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생활수준을 생활비 지출 항목에서 판단하여 보면, 의식주에 지출하는 기본 생활비가 8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비, 오락비 등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문화 생활비의 지출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계층별로는 소작농은 거의 90%를 기본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으나, 자작농은 87%, 자소작농은 75% 를 지출하고 있어, 자소작농층이 상대적으로 기본 생활비 지출 비중이 낮고, 문화생활비의 지출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생활비 지출의 비중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上村의 농가군 중에 미래에 대한 투자도 하고, 소비 수준도 비교적 높게 생활하고 있는 층은 자소작농층으로 보인다.

농가의 경제 상황은 통상적으로 현금과 비현금이 모두 산정된 상태에서 농가 소득에서 가계비를 감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참고로 하는 자료는 현금만을 집계하고 있으므로 농가 경제의 잉여 혹은 부족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으므로 현금 수지의 분석으로써 농가 경제의 경향을 추정하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다. 현금 수지의 절대액이 곧 농가 경제의 규모를 의미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주로 농가 계층 간의 현금 수지를 비교하는데 주력하였다.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모두 합한 것을 경제 규모로 산정하고 이를 경제 활동이 활발한 지표로 가정하여 보았을 때, 자소작농 층이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추정되었다. 자소작농 층은 수치차액에서 살펴본 농가 경제의 견실성 면에서는 자작농과 아울러 마을 농가 중에서 선두 그룹에 속하기는 하지만, 자작농이 더 견실도가 높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자소작농층은 매우 활발하지만, 다소 모험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소작농 층은 경제규모나 견실도 면 어느 면에서도 자작농층이나 자소작농층보다 떨어지고 있는데,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가라는 점에서 어렵지 않

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조사 마을의 土地關係, 생산 및 판매, 가계비, 현금 수지 등을 마을 전체의 평균과 아울러 경영양식별 즉 지주, 자작농, 자소작농, 소작농 등의 농가 계층별로 나누어 분석 비교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소 간과된 것은 동일한 계층 내에서도 개별 농가간의 차이가 심하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는 耕作地의 대소에 따라 대농과 중농, 소농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기도 하지만, 영세 규모의 경작을 하는 上村 마을의 조선농들을 耕作地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의 의미를 크게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개별 농가들의 차이를 다양한 변수로써 비교하여 의미있는 그룹화 작업을 할 필요성은 상존한다고 본다.

만주국 시대의 조선인들의 경제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피는데 본고가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제한적임을 자인한다. 우선 조사된 자료 자체가 양성촌의 조선인 농가 24호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분석 과정에서 조사 자료를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다른 자료와 비교 분석할 여유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더욱 연구되고 보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주제어: 재만 조선농민, 조선인, 만주이민, 만주국, 경제상황, 아편제배

투고일: 2008년 9월 23일, 심사개시일: 2008년 9월 25일, 게재확정일, 2008년 11월 8일

■Abstract ■

Economic Conditions of Korean Peasants in Manchuria during the Manchukuo Period

Kim, Ki-H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general economic conditions of Korean peasants in Manchuria during the 1930s, or the early period of Manchukuo. To achieve this goal, a special report on the economic conditions about a Korean county in the District of Yenchi, Chientao Province in Manchuria in 1934 has been analyzed. This special report is included in “An Investigation Report on the Rural Economic Conditions”, published by a special Investigation Bureau of Manchukuo in 1936.

The county investigated was a settlement composed of 24 Korean peasant households. Most of them were immigrated from the same village in a northern province of Korea, Hamkyongbukdo. The rice field among the cultivated land was reached 70%. As a result, the rice was the main product in the county. The average size of the cultivated land as well as the owned land of each household was very small. Most (90%) of the landlords were Chinese and were living outside the county. Each tenant had to give a half of his one year product to his landlords as the tenant fee. One interesting finding was the opium cultivation by the Korean peasants in the county. All of opium product were sold to the opium collection office located in the near city. Using the result of ‘cash income and spending’ analysis, we might conclude that two groups- the owner cultivators and the part owner and part tenants - were maintaining the most sound economic life among Korean peasants in the investigated county.

Key words : Korean peasants in Manchuria, Korean Immigrants, Manchukuo, economic conditions, opium cultivation